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관세와 통관제도 관련 지원 정책 비교 연구: 코로나19를 중심으로

2020. 10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다 량 특수전문직3급(관세사)

목 차

I. 서론	7
II. 국제기구	11
1. WTO	11
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무역거래 보고서 발간	11
나. 코로나19 위기상황 중 WTO 회원국 간 의사소통 방법 논의	13
다. 코로나19 관련 무역원활화창구(Repository) 운영	14
라. G20에 관한 WTO 무역조치 반기보고서 발간	15
2. WCO	17
가. WCO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 통합 보고서 발표 ..	17
나. A.T.A 까르네 재수출기한 연장 조치 권고	21
다.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의사소통 지침 발표	22
라.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 단일화 작업	25
III. 주요국 및 우리나라	27
1. 미국	27
가. 관세 분야	27
나. 통관 분야	31
2. EU	36
가. 관세 분야	36
나. 통관 분야	39
3. 중국	45

가. 관세 분야	46
나. 통관 분야	49
4. 일본	53
가. 관세 분야	54
나. 통관 분야	56
5. 우리나라	60
가. 관세 분야	61
나. 통관 분야	66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74
1. 국제비교	74
가. 국제기구	74
나. 주요국과 우리나라	76
2. 시사점	86
가. 코로나19 무역 관련 컨트롤타워 프로토콜 마련	86
나. 신속통관의 부작용 해소 위한 방법 강구	88
다. 워드(with) 코로나 시대 대비	92
V. 결론	95
부록	97
1. WCO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코드(HS code) 참고자료	97
2. EU의 재난물품 면세 적용 목록	106
참고문헌	111

표 목차

〈표 II-1〉 코로나19 무역원활화창구 국제기구 목록	14
〈표 II-2〉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코드(HS code) 참고자료 구성 요약 ...	26
〈표 III-1〉 일본 관세국 코로나19 전담세관	60
〈표 III-2〉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 내역	61
〈표 III-3〉 원부자재 항공운임 특례 대상 물품	66
〈표 III-4〉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사본 관련 내용	70
〈표 III-5〉 코로나19 관련 통관애로 지원센터	72
〈표 III-6〉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세정지원센터)	73
〈표 IV-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관련 관세·통관 지원 정책 요약	76
〈표 IV-2〉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지원 정책 요약	80
〈표 IV-3〉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통관지원 정책 요약	85

그림 목차

[그림 Ⅲ-1] 관세감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	63
[그림 Ⅲ-2]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	69

I. 서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국내 보건물자 수급이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외공장 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급속히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임¹⁾
 - 2020년 8월 18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총 2,177만 246명(사망 77만 1,574명)으로 집계되고 있음²⁾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이는 총수요 감소, 기업 생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등 경제위기가 증폭되었음³⁾
 - 대외적으로는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고 해상·항공 운송 등 물류시스템 차질에 따른 수출입 및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기업의 중간재 조달계획 취소·중단 사태가 발생함
 -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외 공장의 조업 중단 및 가동률 하락으로 기업이 경영 악화·도산 위기에 직면함

1)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20. 8. 19.

2)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검색일자: 2020.8.19.

3) 이주미 외,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KOTRA, 2020. 6., p. 1.

- 대내적으로는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지출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 중임
 - 소비자의 소득 감소는 저축 감소로 이어지며 기업의 투자도 약화됨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들의 국경 봉쇄조치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 2020년 5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금액은 46% 이상, 수입금액은 37.2% 이상 급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의 봉쇄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⁴⁾
 - 미국(-54.8%), EU(-50.6%), 중국(-29.4%), 일본(-48.4%)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 규모가 현저히 감소함
 - 또한 언론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출이 크게 줄어 당초 예상한 -2% 초중반을 넘어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3.3%를 기록하고, 분기 성장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함⁵⁾
 - 2분기 수출은 1분기 대비 -16.6%로, 1963년 4분기(-24%) 이후 56년 만에 최악의 지표라고 밝힘
- 코로나19는 한시적 계절성을 지닌 기존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지속적·반복적인 유행성 전염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함
 -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만명, 사망자는 50만명에 달하고, 국가별 단합이나 국제적 연대가 부족한 데다 세계가 분열돼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경고⁶⁾

4) 『조세일보』,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친 영향… 5월 1~10일 수출 46.3%」, 2020. 5. 1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5/20200511397709.html>, 검색일자: 2020. 5. 20.

5) 『중앙일보』, 「-3.3% 역성장 쇼크」, 2020. 7. 24.,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206>, 검색일자: 2020. 7. 24.

6) 『연합뉴스』, 「WHO “코로나19 최악 아직 안왔다”」, 2020. 6. 3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30018300038?did=1825m>, 검색일자: 2020. 6. 30.

- 또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유사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발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지금의 지원정책이 향후 긴급재난에 대비할 일반적인 정책의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되는 신종 돼지독감이 출현하였는데,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⁷⁾
 - 중국 연구진은 신종 돼지독감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강하며 인간 세포에서 자가 복제했다고 밝힘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위축된 경제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광범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⁸⁾ 이에 따라 주요국의 재정, 금융, 통화 지원정책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나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관세 및 통관제도와 관련한 지원정책에 특화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외 봉쇄조치의 대응, 수출입구조의 개선 및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관세기구(WCO) 및 주요국의 관세 및 통관제도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미국, EU, 중국 및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상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므로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함⁹⁾

7) 『노컷뉴스』, 「인간 전염되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중국서 발견」, 2020. 6. 30., <https://www.nocutnews.co.kr/news/5369665>, 검색일자: 2020. 6. 30.

8) 대부분의 주요국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주로 생계 및 고용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정책을 펼침. 통화금융 정책의 경우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주안점을 둠. 조세지원 정책의 경우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제 부담 완화, 가계소득세 환급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은 소비세 면제 등의 지원정책을 적용함

9) 2020년 8월 말 기준 미국(543만 5,908명(사망 17만 453)), 스페인(35만 9,082명(사망 2만 8,646)), 독일(22만 6,638명(사망 9,236)), 프랑스(21만 9,029명(사망 3만 429)), 이탈리아(25만 4,235명(사망 3만 5,400)), 중국(8만 4,871명(사망 4,634)), 일본(5만 6,685명(사망 1,115))(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외발생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 I 장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국제기구인 WTO와 WCO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주요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국제비교로 도출된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제V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림

Ⅱ. 국제기구

1. WTO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내용은 WTO 회원국 간 무역규제 현황을 공유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임
 - 의료용품에 대한 2019년도 무역거래 보고서 발간
 - WTO 회원국 간 온라인회의 등 비대면 의사결정 방법 논의
 - WTO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 무역규제 현황을 공유하는 코로나19 전용 플랫폼 개설 논의
 -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G20의 무역규제 현황 보고서 발간 등

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무역거래 보고서 발간¹⁰⁾

- WTO는 2020년 4월 3일, 2019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무역거래 보고서를 발간함
 -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을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의료기술 및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등 4개 부류로 나누어 관세율과 거래 흐름을 분석함

10) WTO, "TRADE IN MEDICAL GOODS IN THE CONTEXT OF TACKLING COVID-19," 2020. 4. 3.,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rese_03apr20_e.pdf, 검색일자: 2020. 8. 6.

- 의료용품들의 품목분류코드(HS code)는 WCO의 의료용품 품목분류 참고자료를 포함함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용품의 상위 수출입국은 미국, 독일 및 중국임
 - 의료용품의 상위 수출국은 독일(14%), 미국(12%), 그리고 스위스(9%)로 세 국가의 총합은 35% 정도임
 - 의료용품의 상위 수입국은 미국(19%), 독일(9%), 중국(6%) 및 벨기에(6%)로 네 국가의 총합은 34% 정도임
 - 개인보호장비(PPE)의 상위 수출국은 중국(17.2%), 독일(12.7%), 그리고 미국(10.2%)으로 세 국가의 총합은 40% 정도임

- 2019년 의료용품의 수출입 총액은 약 2조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무역의 약 5%에 해당함¹¹⁾
 - 2019년 코로나19 관련 필수 의료용품의 무역거래는 총 5,97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무역의 약 1.7%에 해당함

-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은 4.8%로, 비농업제품의 평균 관세율인 7.6%보다 낮았음
 - 의약품은 2.1%, 소모성 의료용품은 6.2%, 의료장비는 3.4%, 그리고 개인보호장비는 11.5%으로 나타남
 - 134개의 WTO 회원국 중 52%인 70개국은 평균적으로 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홍콩, 중국, 아이슬란드, 마카오, 그리고 싱가포르 등 5개국은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WTO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요 의료제품 공급 흐름에 높은 관세율을 부

11) 수출입 총액은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비의료용 제품을 포함할 수 있음

- 과하는 등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조치를 과도하게 취하고 있어 의료 제품 공급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함
- 마스크나 세정제와 같은 개인보호장비에는 평균 1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7%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을 발견
 - 손비누의 경우 평균 관세가 17%이나 도미니카공화국은 50%를, 이집트는 56.7%의 관세를 부과함

나. 코로나19 위기상황 중 WTO 회원국 간 의사소통 방법 논의¹²⁾

- WTO는 2020년 4월 17일, WTO 회원국들과의 가상회의에서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WTO 관련 의사결정을 지속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과 서면절차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3월 중순부터 직접회의가 중단되었고 그동안 소규모 그룹 통화회의, 서면회의 등을 지속했으며 이날 공식적인 첫 가상회의를 진행함
- WTO 사무총장은 WTO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하여 대면모임이 재개되기 전까지 가상회의나 서면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함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과 공식 결정들의 심의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적·사례별 접근방식을 모색할 것이라 밝힘

12) WTO, "WTO members discuss use of virtual platforms during COVID-19 lockdown," 2020. 4. 17.,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hod_17apr20_e.htm, 검색일자: 2020. 8. 6.

다. 코로나19 관련 무역원활화창구(Repository) 운영

- WTO는 2020년 5월 18일, 코로나19 무역원활화창구(Trade Facilitation Repository)에 WTO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 무역규제 등을 공유하는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였음¹³⁾
 - 무역원활화창구의 전신은 2014년 7월 22일, 개발도상국들의 무역 촉진을 위해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WTO 산하에 설립된 무역원활화 조치 시설(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TFAF)임
- 코로나19 무역원활화창구는 총 17개의 국제기구가 협동하여 코로나19 관련 보도 자료, 사례연구, 조치방법, 정책 예정안, 보고서, 그리고 전용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음
 - 17개의 국제기구의 목록은 <표 II-1> 과 같음

〈표 II-1〉 코로나19 무역원활화창구 국제기구 목록

연번	국문	영문
1	국제무역촉진협회	Global Alliance for Trade Facilitation
2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3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4	국제물류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FIATA
5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6	국제도로수송연합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IRU
7	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8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위한 유엔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NECLAC
9	유엔무역개발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10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11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12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13) Tfafacility.org., "COVID-19 Trade Facilitation Toolkit," <https://www.tfafacility.org/covid19-trade-facilitation>, 검색일자: 2020. 8. 7.

〈표 II-1〉의 계속

연번	국문	영문
13	유엔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UNESCWA
14	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 WBG
15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16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17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자료: Tfafacility.org., "COVID-19 Trade Facilitation Toolkit," <https://www.tfafacility.org/covid19-trade-facilitation>, 검색일자: 2020. 8. 7.

- 코로나19 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관련 각 회원국의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을 구상하였음
 - 코로나19 발생으로 각국은 즉각 무역과 국경을 폐쇄 조치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활동에 즉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요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됨
 - 각 회원국 정부는 무역거래 시 국경의 안전성과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것이 코로나19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함
 - 코로나19 완화를 위해 무역거래를 지속시켜야 하는데, 각 회원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를 제각각 실행함에 따라 관련 정보가 넘쳐나고 자주 변경되며 다양한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분산되는 등, 관세와 통관 관련 정책 입안자와 수출입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어려웠음
 - 이에 따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역 촉진은 특히 중요하며, 국경 간 안전한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단일한 정보통합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됨

라. G20에 관한 WTO 무역조치 반기보고서 발간¹⁴⁾

- WTO는 2020년 6월 29일, G20¹⁵⁾의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5일

14) WTO, "WTO report on G20 shows moves to facilitate imports even as trade restrictions remain widespread," 2020. 6. 29.,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trdev_29jun20_e.htm, 검색일자: 2020. 8. 6.

15) G20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신규 무역조치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TO는 이 보고서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무역거래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힘
- WTO는 검토기간 동안 G20이 새롭게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가 전체 조치의 60%인 총 93개였으며, 이 중 70%인 65개는 무역촉진조치이며, 30%인 28개는 무역제한조치였다고 밝힘¹⁶⁾
 - 대부분의 무역촉진조치는 무역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 인증을 포함한 전자·디지털 절차를 더 강화하여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기타 의료장비를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 무역제한조치에는 살아 있는 동물 무역거래 제한, 개인보호장비 등 수출 금지, 식료품 수출 제한 등이 있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G20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초기에는 90% 이상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했으나, 2020년 5월 중순 기준으로는 무역촉진을 위한 정책을 70% 이상 시행함
 - 코로나19 대응 초기 G20은 개인보호장비, 의약품과 인공호흡기 등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손소독제는 수출허가 또는 쿼터제 수출을 진행했고 어떤 경우에는 전면 수출 금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규제가 나타남
 - 이후의 무역제한조치는 주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나타남
 - 무역촉진조치로는 수입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통관절차 간소화가 23%로 뒤따름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을 말함.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G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7950&cid=40942&categoryId=31866>, 검색일자: 2020. 8. 6.

- 16) 무역조치의 약 3분의 2가 개인보호장비(PPE), 식품, 살아 있는 동물, 의료기기 거래 등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와 무역기술장벽조치(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비중이 높았음

- 특히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의약품 수출 금지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수출제한 조치의 36%가 이미 폐지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WTO 사무총장은 “코로나 대유행 초기 도입됐던 무역제한조치들이 폐지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라면서도 “아직 방심하기엔 이르고,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노력과 지도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2. WCO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경색된 WCO 회원국 간의 무역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들과 관련 보고서 제시임
 -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 Code) 단일화 작업
 - 코로나19 위기사태에서 WCO 회원국 내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지침 제시
 - WCO 회원국들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 통합보고서 발간
 - A.T.A 까르네 재수출기한의 연장조치 권고 성명서 발표 등

가. WCO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 통합 보고서 발표¹⁷⁾

- WCO는 2020년 3월 17일, WCO 회원국들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관세 및 통관 정책 자료를 통합, 분석 및 공유하기로 함
 - 통합 보고서는 2020년 4월 9일에 초판이 발행된 후 네 차례 개정되어 5월 29일에 최종본이 발간됨

17) WCO, *WHAT CUSTOMS CAN DO TO MITIGATE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WCO, 2020. 5. 20.

- 통합 보고서는 WCO 회원국들 중 총 113개 회원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네 가지 섹션으로 구분해 작성함
 - 주요내용은 ① 구호 및 필수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촉진 ② 경제와 물품 공급망의 연속성 지원 ③ 직원 보호 ④ 사회 보호임
- WCO 통합보고서의 네 가지 섹션을 개관하면서, WCO가 회원국들에 바라는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함

1) 구호 및 필수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촉진

- WCO는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원조와 직접적인 기여 등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구호물자 신속통관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그러나 구호물자의 대부분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자통신장비 등 수입규제가 엄격한 물품들이므로 구호물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수입관세의 포기는 국제법적 틀로 권고되지만 관세를 포기함으로써 수입규제를 거쳐야 한다면 구호물자의 적시적소 제공과 같은 바람직한 효과는 없을 것임을 언급함
- 구호물자와 필수재의 국경이동 촉진 정책에 대한 WCO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호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다른 정부기관과 협조할 것
 - 필수품목록에 근거하여 구호물품의 통관을 우선할 것
 - 약식 또는 잠정적 수입신고양식의 사용을 허용할 것
 - 수입국 도착 전 물품신고 및 도착 즉시 반출을 허용할 것
 - 고위험군 구호물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
 - 이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조하에 동시적 검사 수행을 권고함

- 구호물자의 수입관세와 세금 등의 면제 또는 납부중지 등 지원정책을 권고함

2) 경제와 물품 공급망의 연속성 지원

- WCO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MSME)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관의 물품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전 세계 기업의 90% 및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Micro-, Small-and Medium-sized, MSMEs)은 코로나19로 인해 AEO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국제무역 활성화와 물품 공급망의 연속적 지원을 위해 WCO는 세관이 공급망의 기능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무역정책 변경에 대한 정보 접근 개선, 관세 및 수수료 지불을 위한 기한 연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권고함
- 경제와 공급망의 연속적 지원에 대한 WCO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세관 내 코로나19 위기팀을 구성하고 장기적인 인력 가용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
 - 24/7 통관시스템을 작동하고 수출입업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헬프 데스크를 생성할 것
 - 내륙에서 상품의 원활하고 비통제적인 이동을 포함한 엔드투엔드(end-to-end) 공급망 연속성을 위한 지원
 - 위험관리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필수 물리적 검사를 유지하고 신속통관을 도모
 - 화물 운송에 우선·차선을 지정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거할 것
 - 중소기업 특별중심으로 관세연장, 분할납부, 관세부과 등 세제 감면정책을 도입
 - AEO 인증 확대에 유연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을 유지
 - 수출국의 상업문서 연착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과징금 면제

- 원본문서를 제출하거나 특정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요건을 풀어주고 관대하게 조치
- A.T.A 까르네 임시수입물품을 긴급상황으로 재수출할 수 없을 때, 더 긴 유효기한을 제공

3) 직원보호와 사회보호

- WCO는 세관직원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비(PPE) 제공, 코로나19 전담 핫라인 구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함
 - 마스크, 장갑, 세정제 등 개인보호장비 제공
 - 코로나19 증상 예방 및 보고에 대한 직원 문의를 위한 긴급 핫라인 구축
 -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
 - 세관 업무 수행 시 전자서비스 이용 권장
 - 위험도 평가를 통해 확인된 고위험 선적품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물리적 검사 진행
- 코로나19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WCO는 세관행정이 코로나19 관련 위험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정부 당국이므로, 공중보건과 위험성 완화를 위해 세관행정의 사전대응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세관행정은 운송체인을 확보하고 제품안전을 보장하며 국경을 초월한 범죄, 마약과 같은 위험물질의 밀수와 세금 탈세를 방지 등 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국경 수준에서 세관은 국경 내 도착하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여기에 탑승한 여행객과 승무원을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정부 당국임
- WCO의 코로나19로부터 사회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에 대한 세관행정의 준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적절한 통합을 보장해야 함

- 사전승객정보(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API)를 위생관리 당국과 공유
-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측정하고 통계자료를 정부에 제공하여 대유행 대응 결정을 통지
-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계정에 업로드
- 위조 의약품 밀거래 차단
- 소독제 생산에 사용되는 변성되지 않은 알코올의 면세 사용을 확대하고 압수된 알코올이 있다면 구호물품으로 기증

나. A.T.A 까르네 재수출기한 연장 조치 권고¹⁸⁾

- WCO는 3월 20일, WCO 회원국들에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해 A.T.A 까르네¹⁹⁾ 임시수입물품에 대한 재수출이 지연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냄
 - 해당 조치는 최근 많은 국가보증협회(National Guaranteeing Associations, NGA)가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예방조치가 A.T.A 까르네를 이용해 수입한 상품의 재수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와 협의해 추진됨

- WCO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무역제한을 최소화하자는 WCO 방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의 A.T.A 까르네 증서의 재발급 없이 재수출 기한을 재량적으로 늘려 줄 것을 촉구함

18) WCO, "Greater facilities requested for ATA Carnet procedur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 3. 26., http://www.wcoomd.org/en/media/newsroom/2020/march/greater-facilities-requested-for-ata-carnet-procedures-during-the-covid_19-pandemic, 검색일자: 2020. 8. 3.

19)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전본 등을 국가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 해주는 제도로,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함

- 코로나19로 인해 A.T.A 까르네 증서 보유자들이 격리되고 우편서비스 등이 중단되어 통관수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까르네 증서를 재발급 받길 원함
- 그러나 세관에서는 A.T.A 까르네 증서 원본의 파괴,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재발급을 인정하므로 재수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증서 재발급은 어려운 실정임

다.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의사소통 지침 발표²⁰⁾

- WCO는 4월 24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WCO 회원국 내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10가지 지침을 발표함
- 첫째, 코로나19 관련 전담조직(task force) 개선을 권고함
 - 전담조직은 코로나19 관련 최신 업데이트, 정보의 전달 및 향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준수하는 작업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획과 의사결정 업무를 구성원들에게 할당해야 하므로 소규모 조직(10명 미만)일 것을 권고함
 - 주요업무는 ① 정기적으로 온라인(전화 또는 웨비나)을 통한 상황 모니터링 ② 정부의 코로나19 조치 관련 주요 정보 출처 제공과 업데이트 제공 등 ③ 비상 대응 연락처 목록 작성 및 직원 공유 ④ 간결하고 간단한 언어로의 의사소통 ⑤ 대중들의 반응을 청취하고 이를 추적 및 측정 등이 있음
- 둘째, 코로나19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검증하는 것임
 - 세관행정의 공식 발표는 추측이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대중들은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임
 - 따라서 WCO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와 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출처에서 정보를 검증해 세관 정보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조언함

20) WCO, *Guidance on How to Communicate During a Crisis*, WCO, 2020. 4. 24.

- 셋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의사소통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임
 - 세관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세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사소통 시나리오를 구축해 놓을 것을 권고함

- 넷째,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소통할 의사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것임
 - 코로나19 위기 동안 행정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전통적인 도구와 새로운 도구를 혼합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해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 소셜미디어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준비 및 기획하고 답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팀을 구성
 - 민원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관세와 통관 업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세관 운영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세관 직원들 간 신속하고 폐쇄적이지 않은 비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코로나19 정보 공유
 - 웨비나(Webinar), 팟캐스트, 정기채널 등을 이용해 직원과 관련 이해종사자들과 의사소통 진행
 - 긴급정보를 짧은 글로 전달하는 SMS 통지 활용 등

- 다섯째 및 여섯째는 세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임
 - 코로나19 관련 세관 직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사무용 장비나 관련 도구 등의 표면 소독과 WHO의 방역조치 등 모든 보호조치에 대해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것
 -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재택근무자들의 신변을 확인할 것
 -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시에 정보를 전달할 것
 -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세관행정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전달할 창구를 구축해야 함

- 물품 공급망의 무결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절차와 직원 배치에 대한 관세청장의 통지가 필요
- 행정부의 재난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Business Continuity Plan, BCP)을 설명

□ 일곱째는 대면회의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것임

- WHO의 자가격리 조치와 코로나19에 따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행제한 조치를 실시하므로 이에 걸맞게 회의나 행사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음

□ 여덟째는 세관의 언론 문의에 대한 답변 방법임

- 세관의 언론 대응방법은 ① 언론의 어려운 질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준비 ② 언론 브리핑을 짧게 자주 진행하여 정기적인 접촉을 설정 ③ 소셜미디어나 기타 미디어의 코멘트를 모니터링하여 대중의 관심을 측정 ④ 코로나19 관련 실행된 조치 및 계획된 조치, 그리고 해당 조치들이 이해관계자 또는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언론에 공표하기 등이 있음

□ 아홉째는 수립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행정부는 미시적 관점에서 수립된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소셜미디어 리뷰, 이메일에 대한 응답, 그리고 조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 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함
-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담조직(task force)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의사소통 창구 방식이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조직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열째는 코로나19 이후 의사소통 방법의 재구축을 준비하는 것임

-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위기와 마찬가지로 결국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사례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행정부의 원활한 복귀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재구축을 계획하는 등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릴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함

- WCO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세관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시의적절한 의사소통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지침을 활용한 회원국들의 경험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향후 마련할 계획임

라.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 단일화 작업²¹⁾

-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의료용품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의료용품과 구호물자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도모하고, 수출입 당사자와 각 회원국 정부의 통일성 있는 대응을 위해 WCO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HS code) 참고자료’를 발표함
 - 2020년 4월 9일 최초 발표 후, 4월 30일에 2차 개정, 6월 2일 3차 개정본을 최종 발표함
-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 참고자료’는 각 회원국이 적용하는 코로나 관련 의료용품 중 신규 등록 물품, 기존 자료의 설명 추가, 그리고 품목분류의 수정을 포함하여 진단키트부터 의료용 차량까지 100여 개의 품목이 8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록 1. WCO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코드코드(HS code) 참고자료’에 상세내용을 담음

21) WCO, *HS classification reference for Covid-19 medical supplies 3.01 Edition*, WCO, 2020. 6. 2.

〈표 II-2〉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코드(HS code) 참고자료 구성 요약

섹션구분	추가정보
1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진단장비 및 샘플링 키트 등
2	안면보호용 마스크, 장갑, 방호복, 일회용 보호용 앞치마와 부츠 커버 등
3	알코올 용액, 소독제, 과산화수소, 자외선램프 등 소독과 멸균제품
4	인공호흡기, 산소 농축기, 산소치료장비, 맥박 산소측정기 등
5	CT 스캐너, 초음파 기계, 후두경, 적외선 온도계, 주입펌프 및 곡반 등 기타의료기기와 장비
6	의료용 산소, 수술용 거즈와 붕대, 비누, 일회용 삼관키트, 주사기,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 일회용 의료소모품
7	혈체어, 구급차, 이동식 클리닉 또는 방사선 차량 등
8	상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 관련 물품으로 의료용 가구, 임시 병원텐트, 임시 멸균텐트 등

자료: WCO, *HS classification reference for Covid-19 medical supplies 3.01 Edition*, WCO, 2020. 6. 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품목분류코드는 WCO에 가입한 회원국이라면 국제협약으로 6단위까지 공통 적용되므로, 각 회원국들은 ‘WCO 의료용품 품목분류 참고자료’에 따라 신속 통관을 도모할 수 있음
 - 의료용품 품목분류 참고자료에 모든 의료용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 19 관련 주로 수출입되는 의료용품임을 참고해야 함
 - 의료용품 품목분류는 WCO의 권고사항일 뿐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이를 적용할지의 여부는 각 회원국 관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든 의료용품 품목분류는 ‘HS 2017’에 따라 분류되었음

Ⅲ. 주요국 및 우리나라

1. 미국

-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관세 면제와 긴급통관과 같은 지원 및 관세청 내 코로나19 전담팀을 설치한 것임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수입업체 등에 한시적으로 관세 납부를 유예함
 - 코로나19와 관련된 구호물품과 중국산 제품 중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개인보호장비(PPE)와 긴급사용승인(EIA) 품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용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함
 - 코로나19 상황 중 수입되는 식물 검역증명서의 전자문서를 허용함
 - 관세청 내 코로나19 관련 컨트롤타워인 CCRT를 설립하여 의료용품의 전문적 상담과 긴급 수출입을 지원 중임

가. 관세 분야

1) 한시적 관세납부 유예

-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 제조업체와 관련 수입업체들을 위해 한시적 관세납부 유예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함²²⁾

- 미국 재무부와 관세청(CBP)은 2020년 4월 20일 연방규정²³⁾을 개정하여 발표함
- 적용 대상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한 물품에 한함
 - 적용 대상 수입물품은 소비용으로 수입하였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경우에 한함
 - 적용 대상 수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입업자의 사업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어 총수입이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간주되는 자임
 - 사업 중단의 결과로 2020년 3월 13~31일 또는 2020년 4월 기준 수입업자의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의 60% 미만인 경우
 - 필수기업으로 분류돼 영업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아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입업체는 경우에 따라 자격 여부가 별도로 결정됨²⁴⁾
 - 오프라인 매장은 닫았으나 온라인 판매는 지속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
 - 적용 대상 수입자는 이 구제를 받기 위해 관세청에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구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장부와 기록의 일부로 문서를 유지해야 함

22) 미국연방정부공보, "Temporary Postponement of the Time To Deposit Certain Estimated Duties, Taxes, and Fees During the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4/22/2020-08618/temporary-postponement-of-the-time-to-deposit-certain-estimated-duties-taxes-and-fees-during-the>, 검색일자: 2020. 6. 11.

미국 관세청 공고, "Temporary Postponement of the Time to Deposit Certain Estimated Duties, Taxes, and Fees During the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20-Apr/Temporary-Postponement-of-Payment-Period%20for-DTF-20-4-2020-1.pdf>, 검색일자: 2020. 6. 11.

23) 19 CFR Part 24.1a

24) 임소현, 「미국, 수입관세 지불기한 최대 90일까지 유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4. 2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1425>, 검색일자: 2020. 6. 12.

- 관세청 또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을 위해 향후에 문서를 검토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세목은 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기타 세금 및 수수료 등 예치금이며, 다음의 관세 등에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음
 - 수입자가 이미 납부한 관세, 기타 세금 및 수수료 등 예치금
 -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조)에 따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부과된 관세
 - 1974년 「무역법」 제201조(19 U.S.C 2251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
 - 1974년 「무역법」 제301조(19 U.S.C 2411조)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 확정된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청구액, 19 U.S.C 58c에 따른 수수료(물품처리수수료(MPF) 제외), 미국 세관이 부과한 벌금 등 미국 세관에 내야 할 다른 채무 등

- 관세납부 지불기한은 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부터 최대 90일까지인 7월 29일까지 연기될 수 있음²⁵⁾
 - 이연 법인의 경우 마감일이 4월 29일이라면 7월 29일까지, 5월 14일이라면 8월 14일까지 납부 연기됨
 - 정기월별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 PMS)²⁶⁾의 경우 마감일이 4월 21일이라면 7월 22일까지, 5월 21일이라면 8월 21일까지 납부 연기됨

- 관세납부 유예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페널티, 청산 손해 또는 기타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

25) 미국 관세청, “COVID-19-90 Day Postponement of Payment for the Deposit of Certain Estimated Duties, Taxes, and Fees,” 2020. 4. 19.,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2875383>, 검색일자: 2020. 6. 11.

26) PMS란 월간납부 방식으로 한 달간 발생한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다음 달 15번째 근무일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함

- 미국 관세청은 2020년 5월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약 2,600곳 이상의 수입 업체가 5억 7,400만달러(\$ 574million)에 해당하는 관세의 납부를 연기하여 구제책을 이용했다고 밝힘²⁷⁾

2) 코로나19 관련 일부물품 관세 면제

가) 구호물품 관세 일부 면제²⁸⁾

- 관세청은 2020년 4월 9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구호물품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를 발표함
- 적용 대상은 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AM)이 승인한 국제원조시스템(International Assistance System, ISA)의 CONOPS (Concept of Operations) 물품과 ② 미국 자선단체 또는 기타 개인 단체가 수입한 구호물품임
 - IAS CONOPS 물품은 국무부(State Department)의 승인을 얻은 물품임
- 구호물품들은 「관세법」²⁹⁾에 따라 관세 또는 세금 등이 면제되며 일부 물품정보에 대한 신고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
 - 구호물품 수입관세 면제 등의 지침에 따라 처리되는 수입물품들은 입항지, 수입자, 수탁인, 제품의 설명, 수량, 물품 원산지, 목적지 등의 정보를 문서화하여야 함
 - ISA CONOPS 물품이 입항지에 도착하자마자 운송사가 적하목록을 제시해야 하며, 물품들은 관세청 정책에 따라 고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스캔되어야 함

27) 미국 관세청, "CBP Announces May 2020 Operational Update,"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announces-may-2020-operational-update?_ga=2.267927238.931864010.1597716772-1467328774.1591247674, 검색일자: 2020. 8. 18.

28) 미국 관세청, "Processing International Donations for COVID-19 Response,"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285c3d6?wgt_ref=USDHSCBP_WIDGET_2, 검색일자: 2020. 7.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VID-19 관련 관세 및 통관관련 국외동향-미국, EU」,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담회 발표자료, 2020. 7. 16. 참고

29) 19 U.S.C. 1322(International traffic and rescue work) (b) or 19 U.S.C. 1318(Emergencies) (b)(2)

- 자선단체가 면세단체가 아닌 경우, 수입에 대한 관세는 면세되지 않으며, 자선단체는 기부의사를 적시한 문서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자선단체 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중국산 제품 관세 일부 면제³⁰⁾

- 미국 상무부(USTR)는 2020년 4월 24일,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던 중국산 제품 19개 중 특정 품목에 한해 한시적 관세 면제안을 발표함
 - 2019년 9월 1일부터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중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6월 25일까지 제 301조에 의해 관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임
- 관세 면제 대상은 병상 컨트롤러, 의료용 주입펌프, 인쇄 회로판 등의 의료용품 이외에도 모터, 백팩,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다진 마늘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됨

나. 통관 분야

1) 의료용품 수입규제 완화 등³¹⁾

-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2020년 4월 9일, 관세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용

30) KPMG, "KPMG Report: Customs measures in response to coronavirus(COVID-19)", 2020. 4. 8,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4/tnf-kpmg-report-customs-measures-in-response-to-coronavirus.html>, 검색일자: 2020. 6. 23. p. 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VID-19 관련 관세 및 통관관련 국외동향-미국, EU」,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담회 발표자료, 2020. 7. 16. 발췌

31) 미국 식품의약처(FDA), "Information for Fil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During COVID-19," <https://www.fda.gov/industry/importing-covid-19-supplies/information-filing-personal-protective-equipment-and-medical-devices-during-covid-19>, 검색일자: 2020. 6. 23. 및 임소현, 「미 식품의약국,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지침 발표」, 2020. 4.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949>, 검색일자: 2020. 7. 28.

품, 마스크 및 보건물자 등의 수입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운영정책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사용승인(EUA)을 시행했으나, 최근까지는 N95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스크, 의료용 가운, 장갑 등 광범위한 품목은 응급사용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려웠음
- 그러나 4월 초 응급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 품목에 대해 재량적 집행이 대거 발표되면서 코로나19 기간 미국 식품의약처 절차를 생략 후 통관 가능한 범위가 확대됨

가) 개인보호장비(PPE) 수입 규제 제외

- 미국 식품의약처는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응급의료용품을 수입 시 규제하지 않는 개인보호장비를 발표함
 - 적용 대상은 일반 보건용 또는 산업용의 개인 의료용품으로서 질병 및 질병 예방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마스크, 호흡기 제품 및 장갑 등임
 - 일반 보건용 마스크는 FDA 인증을 받아야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한데, 보통 FDA 인증에 4개월 이상이 소요됨
 - 산업용 마스크는 FDA 인증 없이 관세 7% 납부 후 수입이 가능하나, 대표적 산업용 마스크인 N95 방진마스크가 전 세계적 품귀현상으로, 사실상 마스크의 신속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개인보호장비로 수입된 마스크 등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처의 의료기기 규제 준수 없이 의료용 목적으로 홍보되거나 판매될 수 없음
- 수입 규제 제외 대상의 개인의료용품 수입자는 수입정보를 식품의약처로 신고하지 말고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관세청에 바로 신고하면 됨
 - FD 플래그 없이(no FD Flag) 적절한 품목분류코드를 사용해 신고
 - FD1 플래그와 함께 적절한 품목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식품의약처 리뷰에 대해 '거부(disclaim)' 신고

- FD 플래그란 통관인에게 해당 제품이 식품의약처의 리뷰가 필요할 수 있음 알려주는 기능을 뜻함
- FD1의 경우 FDA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물품을 말하며, 규제를 받는다면 통관 정보를 제출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정보 제출을 거부(disclaim) 신고하면 됨

나) 긴급사용승인(EUA) 승인 품목 및 재량적 지침

- 개인보호장비 이외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용품들은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을 얻어 식품의약처의 신속한 리뷰를 거친 후 미국 내로 수입할 수 있음
 - 긴급사용승인을 얻은 제품의 '의도된 용도 코드(Intended Use Code)'는 940.000 (응급사용기기)이며, 식품의약처의 신속한 리뷰를 위해 제품에 적합한 '식품의약처 제품 코드(FDA Product Code)'를 제출해야 함
 - 상기 두 코드를 제출하면 일반적인 의료기기 수입 시 요구되는 식품의약처의 의료기기 규제 준수 정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2020년 4월 5일 기준 긴급사용승인 품목은 체외진단기, 검사실 자체 개발 분자진단 검사(High Complexity Molecular-Based Laboratory Developed Tests), 개인 보호장비(N95 마스크), 인공호흡기 및 기타 의료기기, 치료제 등임³²⁾³³⁾

32)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용승인(EUA)이 허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수입 시 식약처(FDA) 기준에 따른 정보를 등록 후 통관할 수 있음

- Non-NIOSH-Approved Respirators: 80QKU, NIOSH-Approved Respirators
- Face Masks (Non-Surgical), Diagnostic Tests Kits
- Ventilators and Ventilator Accessories
- Face Shields
- Respirator Decontamination Systems
- Extracorporeal Blood Purification Devices
- Infusion Pumps and Infusion Pump Accessories
- Diaphragmatic Pacing Simulator Systems
-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and Hemodialysis Devices

- 또한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재량적 집행(enforcement discretion) 지침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품목과 동일한 규제 면제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통관 시 수입업체는 '의도된 용도 코드(Intended Use Code)'로 081.006(최종 지침에 따른 재량적 집행)을 선택하고 적합한 '식품의약처 제품 코드(FDA Product Code)'를 제출해야 함
 - 상기 두 코드를 제출하면 긴급사용승인 제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처 규제가 면제됨
- 재량적 집행 지침이 발표된 품목은 체온계, 의료용 가운 및 의류, 장갑, 살균·소독기 및 공기청정기, 마스크, 비침투적 원격 모니터링 기기, 인공호흡기 및 액세서리 등이 있음
 - 상세내용은 미국 식품의약처 홈페이지(<https://www.fda.gov>)에서 확인 가능

2) 식물 검역증명서 전자문서 허용³⁴⁾

- 미국 농무부(USDA)의 동식물 검역소(APHIS)는 코로나19의 긴급상황 중 수입되는 동식물과 동식물 관련 제품의 용이한 통관을 위해 식물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의 전자문서를 즉시 허용함³⁵⁾
 - 수입업자와 중개인은 서류 이미지 시스템(Document Imaging System, DIS)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수입통관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Remote or Wearable Patient Monitoring Devices
 •Respiratory Assist Devices

33)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전체 품목 리스트와 상세내용은 미국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https://www.fda.gov/emergency-preparedness-and-response/mcm-legal-regulatory-and-policy-framework/emergency-use-authorization#2019-ncov>, 검색일자: 2020. 6. 30.

34) 미국 농무부(USDA), "USDA APHIS Allows Copies of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in ACE-DIS due to COVID-19," 2020. 4. 8.,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AAAPHIS/bulletins/2858991>, 검색일자: 2020. 6. 30.

35) 단, 소 혈청이나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에 원본이 제공된 적이 없던 모든 국가의 신선 또는 냉동육류 및 가공육류 등은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ACE)에 업로드하거나 전자메일 첨부파일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

- 허용되는 식물 검역증명서에는 원본 증명서의 스캔 사본, 식물검역전자증명시스템(ePhyto)을 통해 생성된 전자 증명서 또는 서명된 서류가 포함됨
- 전자증명서는 2020년 5월 16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됨

3) 코로나19 관련 민원 전담부서 설치³⁶⁾

- 미국 관세청은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서 의사소통을 간소화하고 무역업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관세와 통관 관련 정보를 공지 및 대응하는 전문 센터인 CCRT(COVID-19 Cargo Resolution Team)를 개설함
 - CCRT는 코로나19 관련 물품수입에 관련한 민원의 대응, 직접적인 화물 통관 조정 등 물류 원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CCRT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및 개인보호장비의 수입에 관한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관세청의 제약·보건·화학 우수전문센터(Pharmaceuticals, Health and Chemical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에서 발족한 팀임³⁷⁾
 - CCRT의 민원 범주는 ① 수출입 화물 보관과 시설 지원 ② 코로나19 용품 수입 관련 질문 ③ 개인보호장비 품목분류 관련 정보 ④ 개인보호장비 수입 가이드 ⑤ 관세 관련 질문 ⑥ 기부 관련 정보 등으로 나뉨
 - 또한 관세청 공지(CSM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관세 및 통관 제도와 관련된 뉴스, 백악관 메시지, 식약처나 환경보호국 등의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업로드함
- 관세청은 2020년 5월 업무보고를 통해 CCRT가 설립 이후 2,200여 개의 민원을 상담했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승인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의료용품을 실은 400여 편의 항공을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힘³⁸⁾

36) 미국 관세청, "Launching of CBP's COVID-19 Updates and Announcements Webpage," 2020. 4. 1.,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284667c>, 검색일자: 2020. 6. 30.

37) 홈페이지는 <https://imports.cbp.gov/입>. 검색일자: 2020. 6. 30.

2. EU

- EU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관세 면제와 긴급통관과 같은 지원, A.T.A 까르네 재수출 기한 연장 및 EU 내부 물품이동 등 국경관리지침 등이 있음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로 수입되는 구호물품 등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정책 실시
 - 코로나19 위기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고 관세납부 기한의 예외적 연장 가능성을 언급
 - 회원국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필수품들의 긴급통관제도 실시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전자스캔본, 사본, 디지털 서명의 사본 등의 수취를 허용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적용을 인정
 - 회원국 재량에 따라 A.T.A 까르네 재수출 기한을 최대 10년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EU 회원국 내의 필수재 공급망 보장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EU 내부 국경을 개방하는 지침 등을 발표

가. 관세 분야

1) 재난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³⁹⁾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0년 4월 3일, 개인보호장비, 진단용 키트 또는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물

38) 미국 관세청, “CBP Announces May 2020 Operational Update,” 2020. 6. 12.,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announces-may-2020-operational-update?_ga=2.267927238.931864010.1597716772-1467328774.1591247674, 검색일자: 2020. 8. 18.

39) Commission Decision (EU) 2020/491 of 3 April 2020

품들에 대해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결정을 채택함

- 유럽위원회(EC)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EC 「관세법」⁴⁰⁾과 EC 「부가가치세법」⁴¹⁾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와 부가가치세⁴²⁾를 면제하도록 결정함
- 재난물품의 범위는 WCO의 의약품 목록과 EU 회원국이 제출한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구제 요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품에 근거하여, 약 41개의 품목으로 결정되었음⁴³⁾
 -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EU 재난물품 면세 적용 목록’을 참고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거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국가기관 등이 수입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재난물품의 경우 등
- 국가기관 등이란 다음의 기관을 뜻함
 - 주정부 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병원, 정부 기관, 지역사회(community), 도시, 지방정부 등 공공법이 적용되는 기타 기관
 -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자선 단체
- 재난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⁴⁴⁾
 - 재난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구호물품 등
 - 구제 혜택을 받는 국가기구 등이 해당 면제물품을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빌려주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재난물품 등이 재난 희생자에 의한 사용이 중단된 후,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40) EC 1186/2009 제2조 제1항 제1호(a)목

41) EC 2009/132/EC 제2조 제1항 제1호(a)목

42) EC 1186/2009 제74조 및 EC 2009/132/EC 제51조

43) EC, COVID-19 - INDICATIVE LIST OF PRODUCTS TO BE IMPORTED DUTY - VAT FREE, 2020. 5. 5.

44) EC 1186/2009 제75, 78, 79 및 80조

- 없이 판매하거나 무료로 빌려주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재난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목록은 EU 회원국들에 대한 지침이 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국가적 필요에 따라 행동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함
- 회원국들은 늦어도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정보를 유럽위원회(EC)에 전달해야 함
 - 회원국 관할 당국이 승인한 국가기관 등의 목록
 -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각종 물품의 특성 및 수량에 관한 정보
- 코로나19로 인한 수입물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의 수입에 적용함
 - 유럽위원회(EC)는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국과 협의하여 면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연장⁴⁵⁾

- 유럽위원회(EC)는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불가항력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세 납부기한의 예외적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일부 EU 회원국은 관세 납부기한의 일반적인 연장을 주장, 또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불가항력'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의 일반적인 정지를 요청하였음
 - 유럽위원회는 현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 U.C.C)상에 불가항력에 대한

45) EC, "Guidance on Customs issues related to the COVID-19 emergency,"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ovid-19-taxud-response/guidance-customs-issues-related-covid-19-emergency_en#heading_2, 검색일자: 2020. 7. 20.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과거 판례 등 사례에 비추어 보아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함

- 유럽 「신관세법(U.C.C)」 제108조 내지 제114조에서 관세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EU 회원국이 각국 사정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예상됨⁴⁶⁾
- 「신관세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적인 관세 납부기한은 관세청의 관세 통지 후 10일 이내이며, 제111조에 따라 담보가 보증되는 경우 관세 납부가 연기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임
- 「신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추가담보를 보증한다면 30일을 초과하여 관세 납부 연기를 허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나. 통관 분야

1) 물품의 EU 내부 이동과 국경관리지침 발표

- 유럽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16일 국경관리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필수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EU 내부 국경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음
- 이 문서는 식품과 의료용품 등 필수 물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화물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EU 전역에 걸친 협력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물품공급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자유로운 유통을 지키는 것,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말 것, 운수업자들의 신변 보장 및 지속적인 물품 공급의 약속 등임

46) 유럽 「신관세법」(EU No.952/2013), Eur-lex, "Union Customs Cod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95922550246&uri=CELEX:32013R0952>, 검색일자: 2020. 7. 28. 참조

- 회원국은 모든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야 함
 -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필수식품, 부패하기 쉬운 식품, 가축 등 필수제품의 공급망을 보장해야 함
 - 필수적이고 건강에 관련되며 부패하기 쉬운 상품, 특히 식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물품의 유통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됨
 - 회원국들은 화물 운송을 위한 녹색차선을 지정하고 기존의 주말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EU 단일시장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인증을 부과해서는 안 됨
 - 유럽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이 코로나19의 공급원이나 전송원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운수종사자, 특히 필수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송업 종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됨
- 회원국들은 사회 요구를 충족하고, 공황적인 구매로 인한 상점들 간 과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물품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공급망 전체의 사전 약속이 필요함

2) EU 내부 국경 신속 개방

- 유럽위원회는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생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의 유럽횡단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⁴⁷⁾에 대하여 모든 물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서를 발표함
 - 회원국들은 유럽횡단교통망(TEN-T) 전 구간의 방해받지 않는 물품 수송을 보장

47) 유럽횡단교통망은 유럽의 동맥과 같은 도로, 철도, 내륙 수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항만, 공항, 복합 터미널 등이 통합된 교통망으로 유럽 내 물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함

하기 위해 유럽의회의 지침을 즉시 시행해야 함

- 모든 화물차량과 운전자는 차량의 출발지, 목적지, 등록국가 또는 운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
 -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과 단순 환적차량을 구별해서는 안 됨

- EU 회원국 중 내부 국경 통제가 존재하거나 도입된 경우, 유럽횡단교통망과 관련된 내부 국경 교차 지점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국경 교차 지점을 '녹색차선(green lane)'으로 지정해야 함
 - 녹색차선이란 비상운송서비스(Emergency transport services)를 뜻하며, 운송시스템 내에서 우선권을 가짐⁴⁸⁾

- 운송업자들의 열 감지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녹색차선을 통과하는 시간은 내부 국경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물품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화물차량은 녹색차선을 통과해야 함
 - 녹색차선이 포화상태인 경우, 유럽횡단교통망과 가까운 국경 교차로를 추가 개방하여 녹색차선을 배치해야 함

- EU 회원국은 도로 화물 운송업자와 운송관련업자들의 필수적인 이동을 위해 EU 회원국 내 해당 지역의 모든 유형의 도로접근 제한(주말금지, 야간금지, 부분별 금지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함

- EU 회원국들은 운송업자들의 국적과 거주지와 상관없이 EU 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여행제한이나 강제격리와 같은 제한은 보류해야 함
 - 단, 건강을 이유로 물품과 승객의 국경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조

48) EC, "COVID-19: Guidelines on the progressive restoration of transport services and connectivity," 2020. 5. 13, p. 1.

건에 한함

- 이동제한의 이유가 공개진술 또는 문서로 기록되어 투명성이 존재하는 경우
- 코로나19와 이동제한의 이유 간 연결성을 입증하여 적절한 정당성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정당성은 과학에 기반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질병예방센터(ECDC) 권고안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동제한의 필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엄밀히 균형을 맞추는 경우
- 다른 운송 수단에 대한 제한사항은 반드시 해당 수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이동제한을 관련성과 사례별로 구분하는 경우
- 이동제한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 경우

3) A.T.A 까르네 재수출 기한 연장 허용⁴⁹⁾

- 유럽위원회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자(economic operator)가 업무를 중단하여 일시 수입물품에 대한 A.T.A 까르네 재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해 재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스탄불 협약⁵⁰⁾에 따라 새로운 A.T.A 까르네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A.T.A 까르네에 규정된 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함
- 유럽 「신관세법」 제251조항에 따르면 재수출 이행기간은 사용목적에 달성이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이며, 이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49) EC, "Guidance on Customs issues related to the COVID-19 emergency,"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ovid-19-taxud-response/guidance-customs-issues-related-covid-19-emergency_en#heading_2, 검색일자: 2020. 7. 20.

50) 이스탄불 협약(the Istanbul Convention) 제7조 제2항 및 제14조, WCO,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 of goods(A.T.A. Convention)," http://www.wcoomd.org/-/media/wco/public/global/pdf/about-us/legal-instruments/conventions-and-agreements/ata/pf_ata_conv_text.pdf?la=en, 검색일자: 2020. 8. 12.

4) 필수품 긴급통관 허가⁵¹⁾

- 유럽위원회는 2020년 5월 19일, EU 회원국들에 필요한 공급망의 기능과 필수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업자의 긴급한 통관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함
 - 무역업자들은 원격으로 세관에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세관은 사무실 내에서 긴급통관을 허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도록 함

- 한편, 긴급통관허가의 수용은 각 EU 회원국 세관 당국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함
 -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긴급통관 허용 기준을 평가하고 및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므로 사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유럽 「신관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세관은 신고서 접수 후 늦어도 30일 이내 해당 신고서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함

- EU 회원국마다 코로나19 위기의 대응상황이 상이하므로, 유럽위원회는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가장 시급한 수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역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긴급통관허가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강하게 독려함

5)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적용의 특례⁵²⁾

가)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특례

- 유럽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적법한 형태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교부받기 어려

51) EC, "Guidance on Customs issues related to the COVID-19 emergency,"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ovid-19-taxud-response/guidance-customs-issues-related-covid-19-emergency_en#heading_0, 검색일자: 2020. 6. 24.

52) EC, *Submission of Proofs of Preferential Origin during the CoVid19 Crisis*, 2020. 3. 31.,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200331-information_note_certificates_en_and_fr.pdf, 검색일자: 2020. 5. 20.

워지자 예외적인 조치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또는 전자서명이 날인된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용하기로 결정함

- 코로나19 위기가간 동안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예외적인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필요에 따라 관할 당국이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원본 증명서의 사본으로, 서류 또는 전자적 형식(스캔 또는 온라인 등)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관할 당국에 의해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증명서로서, 디지털서명이 되어 있거나 이것의 사본인 서류 또는 전자적 형식(스캔 또는 온라인 등)
 - 언급된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발급된 사본 등 불완전한 증명서라도 진정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⁵³⁾

-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본 등의 효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발급된 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산일은 2020년 3월 1일부터로 간주됨
 - 각 EU 회원국 관할 당국은 코로나19의 예외적인 상황이 끝나면 수입자에게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음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예외적인 발급방법과 관계없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수입국 관세청이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실사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힘

- 유럽위원회는 각 EU 회원국들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의 예외조치 수락 여부 등을 별도로 정리해 웹페이지에 게재했으며, 간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⁵⁴⁾

53)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이 제공한 확인서를 수령하고 양자 간 의사소통이 완료된 경우 등 불완전한 증명서의 경우

54) EC, *CoVid-19 Crisis-Exceptional measures-Submission of proofs of preferential origin*, 2020,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covid-19-crisis-excep

- 모든 EU 회원국들은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 증명서의 사본을 인정
- 디지털서명의 사본은 불가리, 체코, 독일 및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서 인정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루
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불완전한 증명서를 불
인정

나) 특혜원산지증명서 소급 적용

- 유럽위원회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기로 결정함
 - 원산지증명서 소급 적용이란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관
련 제품을 수출한 후 예외적으로 발행하고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① 특수상황 ② 수출국 세관당국이 증
명서를 발급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수입 시 수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제한함

3. 중국⁵⁵⁾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가 있
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관세면제와 신속통관 지원, 수출세
환급률 인상과 수출상품 내수시장 진입 지원 및 해관총서의 관세통관 지원정책 지

tional-measures-proods-of-preferential-origin-pem-cp.pdf, 검색일자: 2020. 5. 20.

55)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国务院), 국무원 직속기
구인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海关总署), 국세청에 해당하는 국가세무총국(国家
税务总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정부(财政部)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침 발표 등이 있음

- 코로나19 방역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과 자선기부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
-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과 방역물자의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수출상품 내 수시장 진입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한 내 통관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체보금의 면제와 납세 곤란 기업에 체납금 한시적 면제 신청을 허용
- 코로나19 관련 방역물자 신속통관, 무역흐름 원활화를 위해 통관 절차·인허가제도·현장검사를 간소화하고 통관 관련 서류의 전자스캔 허용 등 증명 절차를 간소화함
- 코로나19 대비 해관총서가 관세통관 지원정책 지침을 발표

가. 관세 분야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코로나19 관련 세무 분야 지원정책을 취합하여 지침서를 발표했는데, 총 13가지 정책 중 관세와 통관 관련 정책은 재난 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와 기부용 수입물품의 관세 면제 등 2가지가 있음⁵⁶⁾

1) 재난 수입물품의 관세 면제 등

- 위생건강 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 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됨
- 면세 적용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입된 물품으로, 해관에

56)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코로나19 관련 세무지원 정책(수정)」, http://overseas.mofa.go.kr/cn-shanghai-ko/brd/m_20316/view.do?seq=6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20. 6. 26.

- 미리 통관 등록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하여야 함
- 적용 대상은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기재된 물품으로 수입의약품, 소독물품, 방호용품, 의료장비 및 기타 예방과 방제물자 등임⁵⁷⁾

2) 기부용 수입물품 면세 범위 확대

-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자선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세 면제 장점방법」에 규정된 면세 수입범위를 확대해 기부용으로 수입되는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공동으로 발표함
 - 관련 법령들은 「자선기부물품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02호) 및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임
 - 이번에 추가되는 면제 품목은 진단키트, 소독물품, 방역용품, 구급차, 방역차, 소독차, 응급지휘차임
 -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자는 중국의 유관 정부부서, 기업 및 사업기관, 사회단체, 개인 및 중국 방문 외국인 또는 재중 외국인이며, 이들이 해외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입하여 직접 기부하는 경우와 국내 가공무역기업이 기부하는 경우가 추가됨
 - 기부 대상자에는 성(省)급 인민정부 또는 이들이 지정한 업체 및 기관이 추가됨 - 성(省)급 인민정부가 기부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명단을 공문서로 작성하여 소재지 직속 세관과 성(省)급 세무부서에 통보해야 함
- 기부용 수입물품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입된 물품에 한하며,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 등을 징수한 경우 환급신청을 해야 함
 - 이미 징수된 사례 중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기

57) 중국 해관총서, 「海关总署公告2020年第17号(关于用于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捐赠物资办理通关手续的公告)」,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2852160/index.html>, 검색일자: 2020. 7. 29.

관이 발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통제용 수입물품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증치세·소비세의 환급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

- 만약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경우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와 수입 단계 소비세의 환급처리만 신청해야 함
- 기부용 수입물품의 관세와 증치세 등 환급 신청은 2020년 9월 30일 전까지 세관에 환급수속을 진행해야 함

3) 수출물품 환급률 인상

- 중국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2020년 3월 17일, 다수 물품에 대해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함⁵⁸⁾
 - 자오핑(赵萍) 중국무역촉진회연구원(中国贸促会研究院) 국제무역부 주임에 따르면 이번 수출세 환급률 인상 조치는 크게 3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 국제 유가의 폭락,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운용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코로나19 영향, 특히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수출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이 중국 수출에 주는 타격을 줄일 수 있음을 유념한 조치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평소와 다른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유발될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도와 보다 효과적으로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구분됨

5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中 1,500여 종 제품 수출세 환급률 인상」, 2020. 3. 20.,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7693&mid=a20100000000, 검색일자: 2020. 7. 30.

- 두 개의 부처는 2020년 3월 20일부터 의료·방역 물자 원료에 관련 있는 1,464종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 인상을 고지함
 - 세라믹 위생기, 소독제, 에틸렌, 프로필렌, 스테인레스 대강(스트립) 및 와이어 등 1,084종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률을 10%에서 13%으로 조정하고, 식물생산 조절제 등 380종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률을 6%에서 9%으로 조정함

나. 통관 분야

1) 방역물자 신속통관 조치⁵⁹⁾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는 2020년 1월 26일, 각 직속세관과 통관 관련 현장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자의 무상 수입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히 승인된 녹색통로(绿色通道)를 이용하여 신속 검사 및 반출할 것을 공지함
- 또한 해관총서는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우선 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더 할 수 있음을 공지했음
 - 코로나19 억제에 활용되는 국가 수입약품 관리 허가증이 필요한 의료용 물자는 세관에서 의약 주관 부서의 증명에 따라 우선 통관 후 관련 수속을 사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통관 적용 대상은 수입의약품, 소독품목, 개인보호용품, 구조장비 및 기타 예방 및 방역물자 등임

59)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 「海關總署公告2020年第17号(关于用于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捐赠物资办理通关手续的公告)」,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2858748/index.html>, 검색일자: 2020. 8. 3.

2) 코로나19 대비 관세 및 통관제도 지원정책 발표

가) 대외무역 재개 및 촉진 지원 10가지 조치리스트⁶⁰⁾

- 해관총서는 2020년 2월 16일 '대외무역 재개 및 촉진 지원'을 위한 10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⁶¹⁾
 - 현재의 반독점적 노력 속에서 기업의 영업 재개 및 해외무역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통관, 최소간섭통관, 인증서비스, 수입농산물 시장 접근 통관 절차 신속화 등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내놓음
- 주요내용은 인허가·등록 등 행정수속 간소화, 농수산물식품 수입 허가 대상국과 기업 확대,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통관·점검 효율 향상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출입 신고 착오 및 절차상 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등록절차(企业注册登记或备案手续)를 간소화함
 - 수입생산 설비 및 원재료 신속통관을 진행하며 검사가 필요할 시 기계검사 비율을 높이고 개장검사 비율을 낮춤
 - 농산품과 식품 수입을 촉진, 수입 허용 국가와 기업의 기준을 완화, 그리고 중점해관에서는 농산품 및 식품에 대해 24시간 예약통관을 시행함
 - 수출화물의 검역증, 위생증,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발급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함
 -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사용되는 치료, 예방, 진단용품(백신, 혈액제품, 시약 등)의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입통관을 완화하는 등 특수의료용품의 수입검역절차를 간소화함
 - 생산재개 지연으로 인해 가공무역 관련 신고 기한이 초과된다면 기업 상황을 고

60) 김경환, 「코로나관련 간담회 발표자료(중국해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담회 발표자료, 2020. 7. 16.

61) WCO, 2020b, p. 29.

려하여 주관 해관에서 기한연장 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가공무역 기한 연장 절차를 간소화함

- 핵소(核销, 정산) 수속을 간소화하고 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현장 검사 비율을 완화하고 원격 동영상 및 문서데이터 전자업로드 등의 방식을 채택함
- 행정처벌을 신속하게 처리함
 - 기업이나 개인의 코로나19 방역물자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 신속 처리할 예정
 - 일반적인 행정처벌 사안에 해당하는 화물, 물품, 운송용구, 장부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 당사자가 서면으로 인정한 위법사실 등에 대해 증거를 채택하고 당사자 동의를 거쳐 팩스, 전자우편, 이동통신 등 방식으로 행정처벌 법률문서를 송달할 수 있음
- 국제조정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해외 제한성 무역조치에 대한 대처를 강화함
- 세관 직원 비대면 조치를 강화함
 - 인터넷 해관의 기능 확대, 데이터시스템 고효율 운용, 서면심사 필요자료에 대해 승인을 거쳐 이미지나 스캔 등 방식으로 우선 제출 허용, 그리고 추후 서면 제출을 허용함

나) 개항지 방역 및 통관편리화작업 50가지 조치리스트⁶²⁾

- 중국 해관총서는 2020년 3월 6일, 코로나19 유입 차단, 기업 생산재개 지원 및 각 조치사항의 이행 등을 위해 ‘해관총서 개항지 방역 및 통관편리화작업 50가지 조치리스트(关于统筹做好口岸疫情防控 and 通关便利化工作措施清单)’를 발표함
- 이는 2020년 2월 17일에 발표한 10가지 조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임무 리스트를 구성한 것임

62) 김경환, 2020. 발췌; 중국 국무원, 「统筹做好口岸疫情防控和通关便利化 海关总署制定“50条”任务清单 狠抓落实」, 2020. 3. 20., http://www.gov.cn/xinwen/2020-03/20/content_5493445.htm, 검색일자: 2020. 7. 30.

- 주요내용은 통관절차 간소화, 현장검사 면제, 체보금과 체납금 면제 신청 등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⁶³⁾
- 수출입신고 관련 제출자료 및 증명 간소화, 수입신고 시 계약서 및 포장명세 제출 면제, 수출신고 시 계약서 등 상업서류 제출 면제
 - 서류제출 건에 대해 사진 및 스캔파일 등 전자파일을 접수하고 추후 서면자료 제출
 - 현품검사 시 입회의무 면제
 - 수출입 화주는 감독관리장소 운영인, 운송책임자 등에게 현장입회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등의 전자방식으로 해관에 고지 가능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유효
 -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구에 도착했으나 기한 내 통관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조업 재개 후 경영곤란에 따른 자금 악화 등으로 기한 내 통관할 수 없는 수입물품의 경우 체보금(통관지체금, 滞报金) 면제 신청 가능
 -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가 곤란한 기업의 경우 기한 내 미납 세액에 대한 체납금(滞纳金)을 최장 3개월간 면제 신청 가능
 - 가공무역기업이 생산 재개 지연으로 수책(水冊)을 기한 내 핵소(核销, 정산)하지 못한 경우 등 기한 초과 시 주관 세관에 보세수책의 유효기간 임시 연장 가능

3) 수출상품 내수시장 진입 지원⁶⁴⁾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20년 6월 17일, 수출상품의 내수시장의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 구체적인 내용은 ① 수출상품의 국내 인증획득 지원 및 절차 간소화 ② 유통채널

63) 김경환, 2020. 발취 및 중국 해관총서, 「支持企业复工复产 海关总署再出实招降低通关成本」, 2020. 3. 10., http://www.customs.gov.cn/customs/xwfb34/302425/2881417/index.html?es%24ctr151088%24ListC_Info%24ctl00%24KEYWORDS=%E7%BB%BF%E8%89%B2%E9%80%9A%E9%81%93, 검색일자: 2020. 8. 3.

64) 중국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 国办发[2020]16号」, 2020. 6. 22.,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2/content_5521078.htm, 검색일자: 2020. 7. 29.

전환 지원 ③ 수출신용보험 및 금융지원의 강화 등 ④ 수출 환급률 인상, 수출세 감면, 가공무역 규제 완화 등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등으로 구분됨⁶⁵⁾

- 수출상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하려는 기업은 2020년 말까지 수출 대상국과 중국 품질 기준에 충족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서면 보증서와 성명서를 제출하면 됨
 - 내수로 돌리는 수출상품에는 중문과 외국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부착된 표기의 일체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져야 함
 -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라 밝힘

- 국무원은 수출상품의 내수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을 독려하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함
 - 수출상품에 대해 동선동표동질(同线同标同质, 3동)의 발전을 독려하며 ‘3동’의 적용 범위를 일반소비품, 공업품 분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함
 - ‘3동’이란 같은 생산라인(同线)에서 같은 기준(同标)으로, 같은 품질(同质) 요구에 따라 생산된, 수출 및 내수 모두 가능한 제품을 뜻하며, 과거에는 ‘3동’ 기준을 주로 식품 분야에만 적용해 왔음
 - 국내인지도가 낮고 내수시장 판매 루트가 제한적인 수출상품을 위해 알리바바와 쉑닝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외무역제품 전문코너를 설치할 계획임
 - 국내 구매업자들을 조직화하여 종합무역전시회인 광교회(广交会)와 중국가공무역상품박람회에 해당 상품을 선보이도록 도울 예정임

4. 일본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가 있

65) 윤보라, 「두 번의 초대형 위기, 중국의 대응이 달라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4. 2.,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953>, 검색일자: 2020. 7. 9.

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구호물품의 관세 면제와 우선통관 지원, 통관 관련 서류 절차 간소화, 관세 관련 수수료의 경감, 증장기적 세관 비대면 조치 계획 및 코로나19 관련 전담조직 개설 등이 있음

- 무료로 수입되는 구호물품의 관세와 소비세 면제 및 우선통관 진행
- 코로나19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자의 관세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과 면제와 관세 납부기한의 연장
- 통관 관련 서류의 전자스캔 허용과 날인 조건 유연화 등 증명절차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와 소급 적용 인정 및 AEO 현장검증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
- 증장기적 세관 행정 비대면 조치를 계획하고, 코로나19 전담 세관조직을 개설

가. 관세 분야

1) 구호물품 관세 등 면제⁶⁶⁾

- 구호물품의 수입 신고 시 물품이 무료로 제공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소비세는 면제됨⁶⁷⁾
 - 구호물품의 관세 등 면제 신청은 ‘구호물자 등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됨
 - 관세사에 신고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 통관업자에게 면제 신청의 취지를 알려야 함

2) 관세 신청 및 납부기한의 연장 등⁶⁸⁾

-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자로서 관세 등의 신

66) 일본 재무성 관세국, 「マスク及び消毒液の輸入通関に関するQ&A」, https://www.customs.go.jp/news/news/faq_mask.htm, 검색일자: 2020. 7. 15.

67) 「관세 정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

68) 일본 재무성 관세국, 「マスク及び消毒液の輸入通関に関するQ&A」, 2020. 5. 11., https://www.customs.go.jp/news/news/20200511_index.htm, 검색일자: 2020. 7. 15.

청과 납부가 어려운 자의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함

- 적용 대상은 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부 예정 세액의 납부기한을 재연장하는 경우 ② 특혜신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③ 특혜신고서에 기재된 납부 예정 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등으로, 납부기한이 특정일로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함
 - 수입 당일에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수입신고 대상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특정재해로 인한 상당한 손해의 기산일은 2020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하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간주되는 지역은 일본 전 지역임⁶⁹⁾

- 관세의 신청 및 납부기한의 연장 등은 가장 가까운 세관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관세 납부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세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⁷⁰⁾

- 관세 납부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 등에 의한 영향 정도를 충분히 감안한 후 다시 정할 예정임

3) 관세 관련 수수료 면제 등⁷¹⁾

-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2020년 5월 11일, 특정재해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자의 관세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과 면제 등에 관한 조치를 발표함
 - 코로나19를 「관세법」 제2조의 3 규정의 ‘특정재해’로 간주함

69) 일본 재무성 고시 제122호, 「財務省告示第百二十二号」, <https://www.customs.go.jp/kaisei/kokuji/2020kokuji/2020kokuji0122.pdf>, 검색일자: 2020. 7. 15.

70) 기한연장신청서는 일본 재무성 관세국 서식(https://www.customs.go.jp/news/news/covid-19/form_covid-19.pdf) 참조, 검색일자: 2020. 7. 15.

71) 일본 재무성 관세국,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申請・納付等の期限の延長等について」, 2020. 5. 11. https://www.customs.go.jp/news/news/20200511_index.htm, 검색일자: 2020. 7. 15.

- 적용 대상은 크게 3가지로, ① 지정장소 외 검사 시 수수료 면제 등 ② 증명서 교부 수수료 면제 등 ③ 보세구역허가수수료 면제 등임
 - 구호물자 수입 시 세관 지정 검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할 경우 발생하는 허가수수료의 환급 또는 면제⁷²⁾
 -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정 검사장소 이외에서 검사할 경우 발생하는 허가수수료의 환급 또는 면제⁷³⁾
 -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업소의 소독작업 등으로 인해 손상된 수입 허가서 등,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 해당 증명서의 수수료를 환급 또는 면제⁷⁴⁾
 -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영향으로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업무지장 정도에 따라 보세구역 허가수수료를 환급, 경감 또는 면제⁷⁵⁾

나. 통관 분야

-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2020년 3월 4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입 통관 절차 등을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사항을 발표함⁷⁶⁾
 - 구호물자의 통관절차, 일반적인 통관절차에 유연성 부여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 등의 방법에 대해 안내함

1) 구호물자 관련 간이통관절차 마련⁷⁷⁾

-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구호물자나 라이프라인(lifeline) 확보를

72) 「관세법」 제10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73) 「관세법」 제10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2항

74) 「관세법」 제102조의 2 제3항 및 제4항

75) 「관세법」 제102조의 2 제5항)

76) 일본 재무성 관세국,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に係る輸出入通関手続等について」, 2020. 3. 4., https://www.customs.go.jp/news/news/20200304_index.htm, 검색일자: 2020. 7. 1.

77) WCO, 2020b, p. 17;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재무성 발표 코로나 19 관련 수출입통관대책」, 2020. 3. 9.,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72/view.do?seq=13202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20. 7. 1.

위한 물·연료 등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우선적 수출입 통관을 진행⁷⁸⁾

- 통관절차는 간이한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증물품 등 면세증명서의 서류 제출이 생략⁷⁹⁾
- 구호물자의 수출 역시 간이한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통관절차의 유연성 조치⁸⁰⁾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 등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재무성 관세국은 다음과 같이 통관절차에 대한 유연한 조치를 발표함
 - 관세청과 사전 협의한 자에 한해 지정세관에 수출입 신고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 지정 세관 이외의 신고하기 편리한 세관에 통관신고를 할 수 있음
 -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한 특정문서에 코로나19로 인해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업자 또는 관세사 등은 그러한 서류에 대한 서명 등의 날인 요건이 면제됨
 - 수출입 신고 시 세관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일부 문서를 코로나19로 인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원본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단, 원본은 세관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자 및 수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날짜를 지정함

3)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 등⁸¹⁾

- 코로나19 확대에 의해 경제협력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 등이 원산지증명서 등의 발급을 중단하거나 해당 체약국에서 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수입자의 귀

78) 「관세정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름

79) 구호물품의 우선통관을 위한 수입신고서 서식은(https://www.customs.go.jp/news/news/form_kyuen.pdf)에서 확인 가능, 검색일자: 2020. 7. 1.

80) WCO, 2020b, p.36; WCO, "Customs and Tariff Bureau - Japan," 2020. 3. 30.

81) 일본 재무성 관세국, 「各国における原産地証明書発給停止等への対応」, 2020. 4. 3., https://www.customs.go.jp/roo/origin/roo_corona.htm, 검색일자: 2020. 7. 15.

책사유가 아니라면 「관세법」⁸²⁾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가 인정됨

-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 대상의 통관절차는 서면수속과 인터넷 통관시스템(NACCS) 수속으로 구분됨
 - 서면으로 수속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유예 신청 양식(세관 양식 C-5295, C-5295-1 또는 P-8200)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NACCS에서 수속하는 경우 업무사양서 「5001. 수입신고사항 등록」 및 「전산관 계세관 업무사무 처리요령」에 따라 세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IDA를 실시할 때 원산지증명서 식별코드의 4자리에 'M'⁸³⁾ 또는 '7'⁸⁴⁾을 입력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사(세관)「記事(税関)」'란에 입력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 대상의 통관 후 제출방법 또한 서면수속과 인터넷 통관시스템(NACCS) 수속으로 구분됨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에 ① 신고 연월일 ② 신고번호 ③ 수입신고서 정보 ④ 수입허가 등 알립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전자원산지증명서를 NACCS로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첨부파일등록(MBS) 업무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신고대상 관서와 부서를 수신자로 하고 모든 항목의 각 란에는 ① 제목(CO 코로나 제출 유예) ② 신청번호(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었어야 할 수입신고 번호) ③ 통신란(수입신고 연월일,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
 - 이 경우 사후 제출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유예받은 수입신고 건에 한정함

82)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관세 잠정 조치법 시행령」 제28조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83)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제출 유예 신청을 하는 화물(일반화물) 코드

84) 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품신고서 제출 유예 신청을 하는 화물(EPA용) 코드

4) AEO 현장검증을 전자서류로 대체⁸⁵⁾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면서 AEO의 현장검증 과정은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자료의 검토로 대체되며, AEO 공인신청서 등의 필요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업체의 보유시설 등은 사진으로 대체하고 기타 업체의 내부분서 등으로 현장검증을 대신함

5) 증장기적 세관행정 비대면 조치 계획⁸⁶⁾

- 일본 관세청은 세관행정의 증장기적 비전을 담은 「스마트 세관 구상 2020」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적절한 업무 수행과 직원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지금보다 더 유연한 근로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현재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플렉스 타임제)와 텔레워크의 탄력적인 근무방식에서 더 나아가 원격접속이 가능한 기능(신클라이언트)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직원이 자택의 단말기에서 세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의 개선을 도모하고, 접속 가능한 단말기의 수를 늘리는 등 텔레워크 환경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전자적으로 보존되지 않은 서류를 전자화하여, 자택 등에서 필요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등 텔레워크 업무 효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6) 코로나19 전담 세관조직 개설

- 일본 관세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관세율 및 통관절차 등 다양한 민

85) WCO, "Customs and Tariff Bureau - Japan," 2020. 3. 30.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86) 일본 재무성 관세국, 「税関行政の中長期ビジョン 「スマート税関構想2020」」,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smart/index.htm>, 검색일자: 2020. 7. 15.

원을 이메일로 상담받는 세관조직을 결성함

〈표 III-1〉 일본 관세국 코로나19 전담세관

연번	지역	이메일주소
1	도쿄 세관	tyo-gyomu-sodankan@customs.go.jp
2	요코하마 세관	yok-sodan@customs.go.jp
3	고베 세관	kobe - sodan @ customs.go.jp
4	오사카 세관	osaka-sodan@customs.go.jp
5	나고야 세관	nagoya-gyomu-sodankan@customs.go.jp
6	모지 세관	moji-sodankan@customs.go.jp
7	나가사키 세관	nagasaki-sodan@customs.go.jp
8	하코다테 세관	hkd-gyomu-sodan@customs.go.jp
9	오키나와 지역 세관	oki-9a-sodan@customs.go.jp

자료: 일본 재무성 관세국, 「マスク及び消毒液の輸入通関に関するQ&A」, https://www.customs.go.jp/news/news/faq_mask.htm, 검색일자: 2020. 9. 25.

5.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물품의 관세율을 0%로 한시적 인하하거나 관세를 감면하여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관세부담 경감조치와 관세 징수와 조사를 유예하는 조치 등이 있음
 - 마스크 수입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긴급 시행하고, 무료로 수입되는 마스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함
 - 원부자재의 긴급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수입 시 해상운임을 적용해 관세부담을 완화함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관세 징수와 관세조사를 유예함

-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보호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함
-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사본 제출과 소급 적용을 인정함
- A.T.A 까르네 재수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함
- 장기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전담 세관조직을 개설함

가. 관세 분야

1) 마스크 할당관세 긴급시행⁸⁷⁾

-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17일, 보건·수술용 마스크와 그 주요 원재료인 MB필터의 관세율을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긴급 시행하였음
-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 내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임⁸⁸⁾

〈표 III-2〉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 내역

품목	HSK	규격	관세율(%)		한계수량
방직용 섬유제품	6307.90-9000	수술·보건용 마스크	10	0	수입 전량
부직포	5603.12-1000	멜트 블로운 (Melt Blown)	8	0	수입 전량
	5603.12-9000				
	5603.92-000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3. 17.

87) 기획재정부,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보도자료, 2020. 3. 17.,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UWD7l6rk-TmVxpdCNz-RuIJ.no de10?atchFileId=ATCH_000000000013480&fileSn=1, 검색일자: 2020. 6. 15.

88) 「관세법」 제71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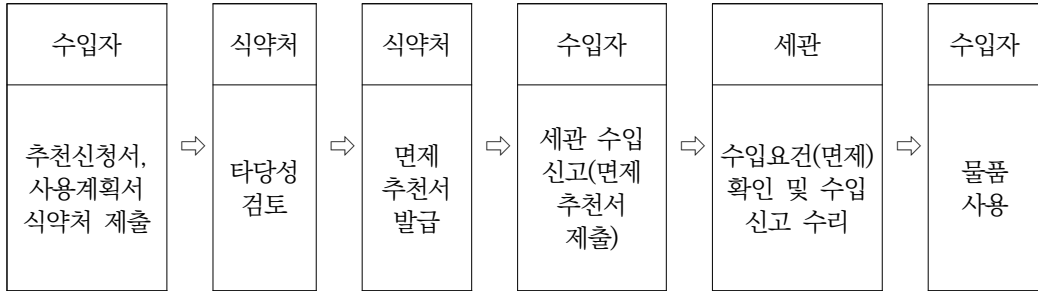
2) 마스크 관세 감면 시행⁸⁹⁾

- 관세청은 2020년 3월 5일, 수입요건 구비대상은 보건·수술용 마스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수입요건을 완화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함
- 적용대상은 보건·수술용 마스크(HSK 6307.90-9000)로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 배포하는 경우 또는 기부 및 구호용품(방역) 목적으로 수입하여 무상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상업용 또는 판매용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하며 이들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수입요건과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준수한 뒤 세관의 통관 심사를 거쳐야 함
 - 식약처의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신속허가를 진행 중임
- 신청방법은 식약처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추천서와 사용계획서를 수입 시 관세청에 제출함으로써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용계획서는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회사 직원 등이 첨부되어야 함
 - 추천서의 접수방법은 식약처의 전자민원⁹⁰⁾으로 신청함
- 감면 시행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인 6월 30일까지이며, 확대되는 경우 자동 연장될 예정임

89) 관세청,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보도자료, 2020. 3. 5.,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nttSn=10051768>. 검색일자: 2020. 7. 31.

90)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에서 전자민원 처리가 가능함

[그림 III-1] 관세감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20. 3. 5.

3)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제도 시행⁹¹⁾

- 관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함⁹²⁾
 -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
 -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단기체납, 체납 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기업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
 -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하는 제도로,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함으로

91) 관세청,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보도자료, 2020. 4. 2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530>, 검색일자: 2020. 5. 21.

92) 관세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대책」, 보도자료, 2020. 3. 26.,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nttSn=10051964>, 검색일자: 2020. 5. 28.

써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함임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1일 0.025% 정도임

- 징수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장 9개월이며, 예외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함
 - 코로나19 특별재난구역은 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임
- 마지막으로 관세 환급 신청 시 신청 당일 환급을 결정하여 바로 지급하고, 사후 심사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

4) 관세조사 유예 대상 확대⁹³⁾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수출 감소와 영업적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주력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힘
 - 5대 국가주력산업은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이며, 코로나19 특별재난구역은 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임
 -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 등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며,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임
- 관세조사의 유예는 대상 기업들이 관세청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자동적으로 유예됨

93)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주요 FTA 통관지원제도」, 『통상』, 통권 제97호, 2020. 6. 1, pp. 26~27; 관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보도자료, 2020. 5. 15.,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720>, 검색일자: 2020. 6. 25.

- 단, 유예 대상 기업이 아닌 기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유예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5)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시 관세부담 완화⁹⁴⁾

- 기획재정부는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운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되는 부품과 부분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적용해 관세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함
 - 항공운임은 해상운임보다 약 15배 이상 높음

- 적용 대상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임
 - 2020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및 직류전동기(HSK 8501.10-1000) 등 3개 품목임
 - 6월 30일 기준으로 11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품목이 적용받음
 - 특례 대상 11개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되었음

- 적용기산일은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인 2020년 2월 5일부터 수입신고한 물품으로, 소급 적용할 예정임

94) 관세청,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보도자료, 2020. 6. 30.,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3241>, 검색일자: 2020. 6. 30.

〈표 Ⅲ-3〉 원부자재 항공운임 특례 대상 물품

HSK	품 명
2941.10-9090	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009.2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7607.11-9000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
8414.90-9090	기타 펌프 부분품
8421.99-9010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8501.40-3000	출력이 750w 초과 75kw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
8501.51-0000	출력이 750w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
8504.31-9010	용량이 100VA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LED)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8544.30-0000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
8544.42-2090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8501.10-1000	직류전동기
9032.89-9090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자료: 관세청,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품목 추가 확대」, 보도자료, 2020. 6. 30.,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3241>, 검색일자: 2020. 7. 1.

나. 통관 분야

1) 자가 사용 마스크 등 신속통관 조치⁹⁵⁾

- 관세청은 식약처와 협의하여 2020년 3월 5일,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개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한시적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통관을 도모하는 조치를 발표함
- 마스크 등은 수입요건 대상이라 식약처의 수입허가와 세관의 통관심사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음

95) 관세청, 「보건용 마스크 등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보도자료, 2020. 7. 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3362>, 검색일자: 2020. 7. 31.

-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입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음
- 적용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인 6월 30일까지이며, 확대가 필요한 경우 자동 연장됨
- 최근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동시에 신속통관 제도 악용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자가사용 방역물품의 목록통관 적용 조치를 종료함
 - 해당 조치는 7월 11일 종료되었으며, 12일부터 수입 신고된 물품들은 기존과 같이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하여야 함
 - 판매 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인증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 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함

2) 원산지증명서 특혜 관련

가)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및 원산지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⁹⁶⁾

-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업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 ①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②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③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 연장 등 한시적으로 FTA 지원정책을 운영함
 - 원산지인증수출자,⁹⁷⁾ AA등급 이상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및 최근 1년 내

96)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주요 FTA 통관지원 제도」, 『통상』, 통권 제97호, 2020. 6. 1, p. 26; 관세청, 「코로나19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보도자료, 2020. 4. 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189>, 검색일자: 2020. 6. 25.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에 한해 세관의 별도 서류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의 24시간 자동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은 정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하도록 원본 사후 제출을 허용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은 수출자가 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해외 수입자로부터 돌려받아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인증 수출자로서 6월 30일까지 인증 연장 신청 시 인증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사후 제출을 허용
 - 원칙적으로 인증 연장 시점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동시 제출해야 함

나) 원산지증명서 소급 적용(한시적 특혜통관 대책 추진)⁹⁸⁾

-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되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한시적 FTA 특혜통관 대책을 수립함
 - [그림 II-2]의 ①과 같이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아울러 [그림 II-2]의 ②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림 II-2]의 ③과 같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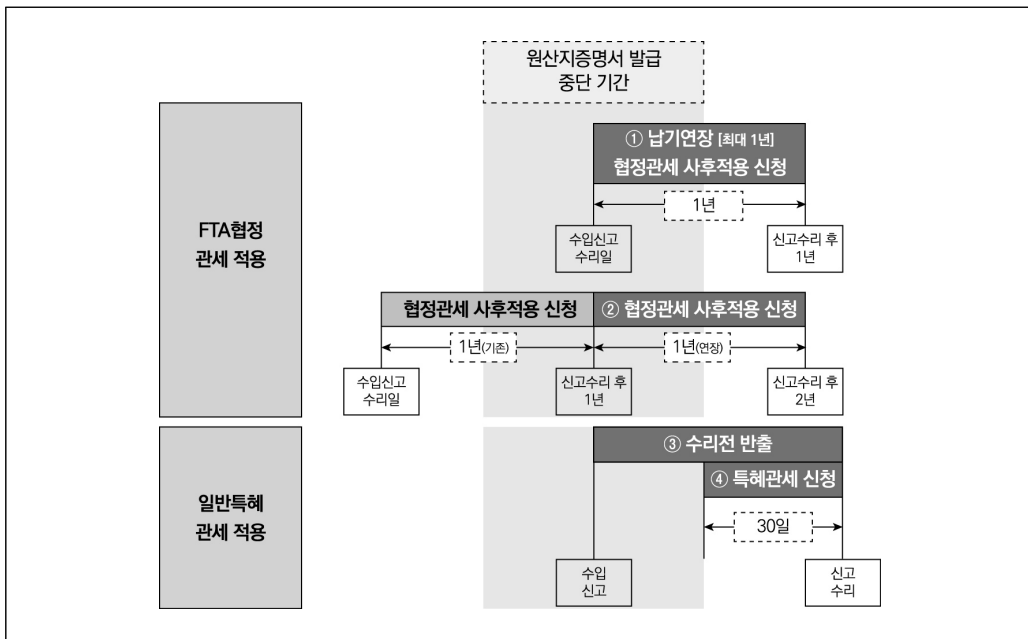
97)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품목에 대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8) 관세청,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통관 가능합니다」, 2020. 4. 27.,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509>, 검색일자: 2020. 5. 21.

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그림 II-2]의 ④의 경우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그림 III-2]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20. 4. 27.

-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자의 FTA 활용 애로 발생을 우려해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방식에 해당하는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⁹⁹⁾

99)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주요 FTA 통관지원 제도」, 『통상』, 통권 제97호, 2020. 6. 1, p. 26.

- 2020년 4월 28일 기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 등 4개국이 제안을 수용함

〈표 Ⅲ-4〉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사본 관련 내용

국가명	회신내용
싱가포르	- 한국 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사본 허용
말레이시아	- 자국 국내 봉쇄조치 기간 내 원산지증명서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 내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태국	- 2020년 4월 16일~9월 30일 중 모든 FTA에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30일 추가 연장 가능)
인도	-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해 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허용뿐만 아니라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 p. 26.

3) 장기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¹⁰⁰⁾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급감으로 인한 면세산업의 매출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함
-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면세업체의 건의 내용을 수용함
- 다만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국내시장에 유통할 것임

100) 산업통상자원부, 2020, p. 27; 관세청, 「관세청,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보도자료, 2020. 4. 29.,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565>. 검색일자: 2020. 6. 25.

4)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 한시적 연장¹⁰¹⁾

- 관세청은 5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A.T.A 까르네 재수출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이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이번 조치로 연장된 재수출기간은 기존 1년에 더해 추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이 가능함
 - 관세청은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의 미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됨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 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5) 코로나19 관련 통관애로 및 세정지원 담당부서 설치

- 관세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본부세관 등 6개

101) 관세청, 「항공기 중단 대응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보도자료, 2020. 5. 1.,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649>, 검색일자: 2020. 6. 25.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 중임

-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하던 2월 초에는 중국 내 공장이 폐쇄되어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중국 세관당국과 협조하고, 중국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과 함께 기존의 중국 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 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들의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함¹⁰²⁾
- 코로나19가 일부 안정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¹⁰³⁾과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 제공 생략 등 전반적인 수출입 신속통관을 지원함¹⁰⁴⁾

〈표 III-5〉 코로나19 관련 통관애로 지원센터

세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2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3	031-8054-7046	fata3766@korea.kr

자료: 관세청, 「노석환 청장, 경제활력 제고 수출입기업 간담회 개최」, 2020. 5. 22., 보도자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819>, 검색일자: 2020. 5. 22.

-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승인, 관세조사 연기 등의 세정을

102) 『한국세정신문』,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통관애로 해소 지원」, 2020. 2. 6.,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476>, 검색일자: 2020. 8. 18.

103) 관세청, 「코로나19 관련 FAT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보도자료, 2020. 4. 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189>, 검색일자: 2020. 8. 18.

104) 관세청, 「관세청,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보도자료, 2020. 6. 15.,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3052>, 검색일자: 2020. 8. 18.

지원 증임

- <표 III-6>과 같이 지역별 본부세관에서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 및 확인하는 등 민원처리 증임

<표 III-6>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세정지원센터)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032-452-3315/3321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자료: 관세청,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보도자료, 2020. 4. 2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2530>, 검색일자: 2020. 5. 21.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국제기구

- WTO와 WCO 모두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등의 무역거래 관련 보고서 발표와 이들의 국제기준에 따른 수출입 행정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범세계적 통일성을 보여주려 노력함
 - WTO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2019년도 무역거래 보고서를 발간함
 - 의료용품 등의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은 4.8%이며, 의약품은 2.1%, 소모성 의료용품은 6.2%, 의료장비는 3.4%, 그리고 개인보호장비는 11.5%로 나뉘어 있음
 - WCO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발표함
 - 코로나19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여 개의 품목을 8개의 섹션으로 구분해 정리함
- WTO와 WCO 모두 코로나19 시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WTO는 WTO 회원국 간 의사결정을 지속하기 위해 온라인 회의와 서면절차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방법을 강구 중임
 - WCO는 코로나19 사태에서 WCO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내 의사소통 방법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전담조직 개설, 코로나19 관련 정보 검증, 비대면 조치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코로나19 관련 정보 소통창구 구축, 세관직원과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의사소통 진행, 비대면 회의방법 강구, 세관의 언론문의에 대한 답변 방법, 코로나19 관련 수립된 조치의 지속적 평가,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의사소통 방법의 재구축 등 총 10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WTO와 WCO 모두 코로나19 관련 무역규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개설하거나 관세와 통관 관련 지원정책 자료를 통합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무역규제와 지원정책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음

○ WTO는 총 17개의 국제기구와 협동하여 WTO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 무역규제 현황을 공유하는 코로나19 전용 플랫폼을 개설함

- 코로나19의 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각 국가의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함

○ WCO는 113개의 WCO 회원국들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관세·통관 지원정책을 분석 및 통합한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는 ① 구호 및 필수물자의 국경 간 이동 촉진 ② 경제와 물품 공급망의 연속성 지원 ③ 직원 보호 ④ 사회 보호 등 4가지 섹션으로 구분하여, 회원국들의 관세와 통관 관련 지원정책을 살펴봄

□ 그 외의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으로 WTO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G20의 무역규제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WCO는 A.T.A 까르네 재수출기한 연장조치를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WTO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G20의 신규 무역규제조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 동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신규 무역규제는 전체 조치의 60%였으며, 이 중 70%는 무역촉진조치, 30%는 무역제한조치였음

- 무역촉진조치는 무역인증절차 간소화, 전자인증이나 사본인증 허용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간소한 수입절차를 도모하는 내용임
 - 무역제한조치는 살아 있는 동물거래 제한, 개인보호장비 등의 수출금지, 식료품 수출제한 등 이였음
- WCO는 코로나19로 인해 A.T.A 까르네 임시수입물품에 대한 재수출이 지연되는 경우, 그 유효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WCO 회원국들에게 권고함

〈표 IV-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관련 관세·통관 지원 정책 요약

구분	WTO	WCO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2019년도 무역거래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번호(HS code) 단일화 참고자료 발간
코로나19 시대의 의사소통 방법	WTO 회원국 간 온라인회의와 서면절차를 이용한 의사결정 방법 논의	코로나19 사태에서 WCO 회원국 내 의사소통 방법 지침 제시
코로나19 관련 무역규제	WTO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 무역규제 현황을 공유하는 코로나19 전용 플랫폼 개설	WCO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관세·통관 지원정책 통합 보고서 발간
기타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G20의 무역규제현황 보고서 발간	A.T.A 까르네 재수출기한 연장조치 권고 성명서 발표

자료: 본문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주요국과 우리나라

1) 관세

-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 관세납부 유예 정책을 시행 중인데, 경영악화에 대한 기준은 미국에만 있으며 납기연장일수의 범위는 일본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함

-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의 기준은 2020년 3월 13~31일 또는 4월간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EU는 코로나19를 '불가항력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관세 납부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며,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회원국 사정에 맞게 조치할 것을 요청함

- 유럽위원회는 「통일관세법(U.C.C)」에 불가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과거 판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심각하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

○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발표함

- 적용 대상은 납부기한이 특정일로 정해진 건에 한정하며, 수입 당일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수입신고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납부기한 연장일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19 대응 정도에 따라 충분히 감안한 후 확정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등의 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함

- 대상 기업은 관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최대 1년 범위 내로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구호물품 관세 한시적 면세제도는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이며, 수입자의 범위와 면세대상 의료용품 범위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미국과 EU는 구호물품 수입자의 조건이 국가기관 또는 민간 자선단체여야 하나, 중국은 개인과 외국인도 포함되어 수입자 범위가 가장 넓었고,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입자 조건이 별도로 없음

- 중국은 최초로 위생건강주관부서가 수입하는 방역물자만 면세 조치하였다가 이후 국가기관, 기업, 사회단체, 개인, 그리고 중국 방문 외국인 등으로 확대함

- 일본은 수입자 조건이 별도로 없으며 수입자의 면세 신청서에 따라 세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수입자 조건이 별도로 없음
- 구호물품 중에서도 무상으로 수입되는 구호물품만 면세 적용인지 여부와 구호물품 범위에 제한을 두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구호물품의 무상수입 조건이 별도 없으며, 특이사항으로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던 중국산 제품 중 의학적으로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 제301조 관세 부과를 한시적 제외 조치함
 - EU, 일본 및 우리나라는 무상수입되는 기증품과 구호물품만 면세가 가능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수술용 마스크만 면세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음
- 중국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용품, 방역물자 및 원료 등 1,464종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함
 - 세라믹 위생기기, 소독제, 에틸렌, 프로필렌, 스테인레스 대강(스트립) 및 와이어 등 1,084종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률을 10%에서 13%으로 조정하고, 식물생산 조절제 등 380종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률을 6%에서 9%으로 조정함
- 중국과 일본은 관세와 관련된 세금 또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함
 -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한 내 통관이 어려운 수입물품의 체보금(통관지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미납세금에 대해 발생하는 체납금을 최대 3개월까지 면제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는 등, 관세 관련 세금을 면제해 줌
 - 일본은 코로나19를 ‘특정재해’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자의 지정장소 외 검사수수료, 증명서 교부 수수료, 보세구역 허가수수료 등을 면제 조치함
- 그 외의 관세정책으로 우리나라는 마스크 할당관세 발동,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시 관세부담 완화, 관세조사 유예 대상의 확대 등이 있음

- 보건·수술용 마스크와 그 원재료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발동함
- 항공으로 수입되는 부품과 부분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항공운임보다 15배 저렴한 해상운임으로 적용하여, 긴급 수급이 필요한 원부자재의 관세 부담을 완화함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국가주력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함
 - 국가주력산업은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및 조선 등이며, 특별재난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임

〈표 IV-2〉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지원 정책 요약

구분	미국	EU	중국	일본	우리나라
한시적 관세 납부 유예정책	최대 90일 ¹⁾	회원국 재량조치	X	미정 ²⁾	최대 1년
한시적 구호물품 관세 면세정책	국가기관 또는 민간자선단체	국가기관 또는 민간자선단체	개인과 외국인 포함	-	-
	무상조건	무상수입조건	-	무상수입조건	무상수입조건
수출세 환급률 인상	X	X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방역물자 및 원료	X	X
관세 관련 세금 또는 수수료 지원	X	X	체보금과 체납금	지정장소 외 검사수수료	X
				증명서 교부 수수료	
				보세구역 허가수수료	
기타	X	X	X	X	마스크 할당관세 원부자재 긴급항공수입 시 관세 완화 관세조사 유예

주: 1) 미국 수입업체 등의 2020년 3월 13~31일 또는 4월간 총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0% 미만인 경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봄

2) 일본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일수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자료: 본문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관

- 주요국과 우리나라 모두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수입규제 완화정책 또는 구호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며, 규제 완화 또는 신속통관 대상 물품의 범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마스크에 한해, 미국은 마스크와 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식약처 수입규제를 완화하였고, 우리나라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목록통관을 허용해 신속통관을 도모함
 - 미국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호흡기 제품 등 개인보호장비에 대해 식약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보호장비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은 긴급사용승인(EUA)을 얻어 식약처의 신속한 심사를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¹⁰⁵⁾
 - 우리나라는 직원 배포용 또는 구호물품으로 무상 수입되는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의 수입요건을 완화했으며, 자가사용 개인보호장비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한시적 목록통관 대상으로 적용해 신속통관을 도모함
 - EU, 중국 및 일본은 지원 대상 물품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이들은 수입규제와 신속통관의 경계 없이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선보임
 - EU는 EU 내 물품 공급망 기능 개선과 필수품의 자유로운 공급을 위해 무역업자가 긴급통관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의 범위를 의료용품과 구호물품에 한정하지 않았으나, 대신 수출입자들에게 긴급통관허가 요청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함
 - 중국 해관총서는 각 성 세관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자의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을 위해 녹색통로를 이용해 신속 검사 및 반출할 것을 공지함
 - 일본은 마스크와 소독액 등 구호물품 수출입 시 간이한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물품 등 긴급 통관을 할 필요가 있는

105)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구호물품의 정보에 대한 수입신고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하여, 간접적 지원정책을 밝힌 것으로 보임

물품은 우선 통관함

- 주요국과 우리나라 모두 통관 관련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사본과 전자서류를 허용하는 등 행정절차의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특히 EU와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한해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EU와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전자스캔본, 사본, 디지털서명의 사본 수취를 허용하며 원산지증명서 소급 적용도 허용 중임
 - 단 EU의 소급 적용은 특수상황과 수출국 세관이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수입 시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외의 상세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EU의 지원정책에 더해 ① 원산지증명서의 24시간 자동발급 ②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등 EU보다 지원정책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은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함
 - 중국은 연방정부가 발표한 제2차 신속통관조치리스트에서 통관 관련 서류 제출 시 사진과 스캔파일 등의 전자파일을 선접수하고, 추후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세내용이 결여됨
 - 일본은 ① 지정 세관 이외의 세관에 통관신고 가능 ② 원본서류의 기준(날인 유무와 전자서류) 완화 ③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유예 ④ AEO 현장검증 서류를 전자제출로 대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완화함
-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함
 - 미국은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에 대응하는 전문센터(CCRT)를 설치함
 - 미국 CCRT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1차적으로 전담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물류 원활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임

- 일본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관세율 관련 문의, 통관절차 민원과 세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민원을 전담하는 세관부서를 안내함

- EU와 우리나라는 A.T.A 까르네 임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한 연장조치를 허용함
 - EU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임시수입물품의 재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유럽 「신관세법(U.C.C)」 제251조 제3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A.T.A 까르네 임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1년에 추가로 최대 3개월까지 재수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또는 면세품의 내수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함
 - 중국은 ① 수출물품의 국내인증 획득 지원 및 절차 간소화 ② 유통채널 전환의 지원 ③ 수출신용보험과 금융지원 강화 ④ 수출세 환급률 인상과 수출세 감면 등으로 수출물품 내수시장 진입을 허용함
 - 우리나라는 면세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
 - 단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통관을 거치고 세금을 납부한 뒤 국내시장에 유통되었음

- EU는 그 외의 통관정책으로 EU 내부에서의 물품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경관리지침을 발표, 중국은 해관총서가 코로나19 대비 관세통관 지원정책을 발표, 일본은 증장기적 세관행정 비대면 조치 계획을 발표함
 - EU는 물품의 EU 내부 이동 허용과 국경관리지침 및 EU 내부국경을 신속 개방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EU 내 물품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정함

- 중국은 해관총서에서 코로나19 대비 관세와 통관제도 지원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며, 이를 각 성의 세관의 형편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은 세관행정의 중장기적 비전을 담은 「스마트 세관 구상 2020」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응 방법으로 재택근무 환경과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강화하는 등 세관 직원의 비대면 업무계획을 밝힘

〈표 IV-3〉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통관지원 정책 요약

구분	미국	EU	중국	일본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규제완화, 구호물품 신속통관	개인보호장비(PPE), 긴급사용승인(EUA) 의약품	코로나19 관련 필수품	코로나19 관련 필수품	코로나19 관련 필수품	보건·수술용 마스크 ¹⁾ 개인보호장비(PPE) ²⁾
각종 증명서 행정절차 완화	식품검역증명서 전자서류	원산지증명서 전자서류 등 소급 적용 ³⁾	통관 관련 서류	통관 관련 서류 원산지증명서 소급 적용 ³⁾	원산지증명서 전자서류 등 소급 적용 ³⁾
코로나19 전담부서 설치	관세청 내 코로나19 전담팀(CCRT) 설치	X	X	본부세관 내 코로나19 전담팀 설치	본부세관 내 코로나19 전담팀 설치
ATA 까르네 재수출기한 연장	X	최대 10년 이내 회원국 재량	X	X	기존 1년에 추가 3개월
수출물품 내수시장 진입 허용	X	X	수출물품 국내시장 진입 지원	X	장기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기타	X	EU 내부 물품이동 EU 국경관리지침 EU 국경 신속오픈 지침	코로나19 대비 해관총서 지원정책 지침	「스마트세관 2020」에서 세관 행정 비대면 조치 계획	X

주: 1) 직원배포용 또는 구호물품으로 무상 수입되는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한함
 2) 자가사용에 한함
 3)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전자스캔본, 사본, 디지털서명의 사본 수취를 포함
 자료: 본문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코로나19 무역 관련 컨트롤타워 프로토콜 마련

-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질병 관리본부라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컨트롤타워란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중앙집중식으로 지휘를 제공함¹⁰⁶⁾
-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청 내에 코로나19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급감한 무역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이를 정책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첫째,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과 각종 물품의 수출입 규제와 관련 정보들의 전달창구를 단일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우리나라 관세청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정책 민원의 수용 범위와 민원 대응의 전문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WTO의 경우 WTO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무역규제 내용을 공유하는 전용 플랫폼인 '코로나19 무역원활화 창구'를 개설해, 무역규제 관련 정보의 전달창구를 단일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임
 - 총 17개의 국제기구가 협동하여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 사례연구, 조치방법 등 WTO 회원국의 무역규제 현황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WTO 회원국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무역규제들을 홈페이지와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공유 중임¹⁰⁷⁾

106) 해외에서는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보다 지휘본부 뜻으로 커맨드센터(command center)라고 표현함. 자료: 『중앙일보』, 「다른 나라는 안 쓴다, 한국만 있는 '컨트롤타워」, 2018. 11. 10., <https://news.joins.com/article/23112520>, 검색일자: 2020. 8. 18.

107) WTO, "COVID-19: Measures affecting trade in good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trade_related_goods_measure_e.htm, 검색일자: 2020. 8. 18.

- WCO도 WCO 회원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을 통합 및 분석하여 WCO 홈페이지에 공유 중임
 - WCO의 회원국에 바라는 코로나19 대응 권고사항과 함께 113개 WCO 회원국의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을 하나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주요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외에도 신흥개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교역국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음

- 미국 관세청(CBP)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관화물의 공항과 항구에서의 직접적 조정을 위해 CCRT라는 코로나19 민원 대응팀을 설치하였으며, 이 팀이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업무에서는 핵심기구이며 범정부기관의 역할을 함
 - 미국 CCRT의 핵심은 코로나19 관련 민원 상담원들이 제약, 보건, 화학 등의 전문센터 소속이라는 것임
 - 공항 및 항구와 직접 소통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들의 신속통관을 진두지휘함
 - 그 외에 관세와 통관 관련 정보를 통합 및 업데이트하고 통관 애로와 세정지원에 관한 민원을 관세청 공식 이메일 하나로 받는 등 정보소통창구를 단일화함

- 우리나라 관세청 역시 관세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섹션을 별도 설치하여 정보의 전달창구를 통합하였는데,¹⁰⁸⁾ 이에 더하여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이나 기타 물품의 수출입 규제 현황이 공유되면 관세와 통관제도 관련 정보 전달창구가 단일화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¹⁰⁹⁾

108)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수출입 통관 정책, 수출입 기업 지원, 기타 지원활동, 그리고 관계부처 공지 등의 언론자료와 관세청 공지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섹션별로 정리함

109)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DB자료실에는 전 세계의 대(對) 우리나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조사 및 조치 중인 품목들이 정리되어 있지만, 코로나19에 특화된 규제정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 CCRT처럼 통관 애로사항과 세정지원팀을 통합한 단일의 팀을 설치한다면 정보흐름을 획일화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 특히 의료용품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수용 가능한 민원범위를 확대하고, 민원대응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¹¹⁰⁾
- 코로나19 통관애로지원센터는 중국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초 긴급 결성된 부서로서,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는 전체적인 수출입 통관절차의 신속성을 지원함
-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팀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이에 따른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부서임

나. 신속통관의 부작용 해소 위한 방법 강구

1) 코로나19 관련 범죄 행위 적발 필요

- 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해 시행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신속통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아야 함
- WCO와 주요국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용품 등에 대한 사기 행각이 활발하게 발생했다고 발표해 우려를 자아냈음
 - WCO는 온라인에서 의료용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요하며,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및 베트남의 관세청 또는 법집행 기관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3월 동안 위조 의료용품의 압수를 보고했다고 밝힘¹¹¹⁾

110) 우리나라는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평택세관 등 총 6개의 본부세관에 통관애로지원센터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여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대응 중임

111) WCO, "COVID-19 Urgent Notice: counterfeit medical supplies and introduction of export controls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2020. 3. 23., http://www.wcoo.md.org/en/media/newsroom/2020/march/covid_19-urgent-notice-counterfeit-medical-supplies.aspx, 검색일자: 2020. 8. 3.

- 미국 관세청은 범죄조직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용품 등의 제한된 공급과 증가된 수요를 악용한다며, 한 예로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개인의료용품 위조품, 미승인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표준 이하의 위생제품을 밀수 및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음¹¹²⁾
- EU의 사기방지사무소(OLAF)는 3월 중순부터 마스크, 의료기기, 소독제 및 테스트 키트의 밀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 340개 이상의 회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조 또는 표준 이하 제품의 중개자 또는 거래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¹¹³⁾
 - 가짜 EU 적합성 인증서가 첨부된 수백만 개의 표준 이하 의료제품이 여러 회원국에서 압수됨
- 우리나라도 판매 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인증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신속통관의 부정적 효과가 일부 발생함¹¹⁴⁾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악이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2020년 7월 11일부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목록통관 특혜를 일반적인 수입신고 대상으로 회귀함¹¹⁵⁾
-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위조물품의 강력한 적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112) 미국 관세청(CBP), "CBP Continues to Seize Large Number of Counterfeit and Unapproved COVID-19 Products," 2020. 6. 5.,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continues-seize-large-number-counterfeit-and-unapproved-covid-19>, 검색일자: 2020. 8. 14.

113) EC, "Inquiry into fake COVID-19 products progresses," 2020. 5. 13., https://ec.europa.eu/anti-fraud/media-corner/news/13-05-2020/inquiry-fake-covid-19-products-progresses_en, 검색일자: 2020. 8. 14.

114) 『조세일보』, 「FDA 인증품 믿었는데... 코로나 틈타 중국산 체온계 불법유통」, 2020. 7. 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03401399.html>, 검색일자: 2020. 8. 14.

115) 관세청,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안내(7. 11)」, 보도자료, 2020. 7. 10.,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nttSn=10053385>, 검색일자: 2020. 7. 21.

- EU는 코로나19 의료용품 위조방지를 위해 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함
 - 유럽사기방지사무소(OLAF)는 4월 20일, 불법 웹사이트를 식별하고 제거할 목적으로 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제3국과 협력 중임
 - 이미 340개 이상의 회사가 코로나19 관련 위조 또는 표준 이하의 의료용품의 중개자 또는 거래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위조 및 변조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통제 및 집행 조치에 적응된 사기꾼들의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임
 - 사기꾼들은 그들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 생산공장, 공급업체, 제3국의 여러 브로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브로커 등을 경유하며 위조 및 변조의 정보를 감추기 때문에 정밀한 추적을 요함

- WCO는 CENcomm 3.0 플랫폼 내에 지식재산권 IPR CENcomm Group이라는 시스템을 출시해 각 세관의 위조 의약품 등의 적발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¹¹⁶⁾
 - 지식재산권 IPR CENcomm Group 시스템은 각 회원국들에게 위조 의약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가짜 의약품들의 빅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빅 데이터를 전 세계 세관들과 공유하여 밀수출입 의약품들의 수출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임

- 세계경제포럼의 한 기사에서는 코로나19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망의 투명성을 위해 일반 QR코드보다 더 고도화된 복사감지패턴(Copy Detection Pattern, CDP)의 활용을 촉구함¹¹⁷⁾

116) WCO, "COVID-19: WCO launches an IPR CENcomm Group for data exchange on counterfeit medical supplies and fake medicines," 2020. 3. 25., http://www.wcoomd.org/en/media/newsroom/2020/march/covid_19--wco-launches-an-ipr-cencomm-group.aspx, 검색일자: 2020. 8. 3.

117) Weforum, "Counterfeiter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pandemic. Here's how to stop them," 2020. 6. 11.,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6/counterfeiters-pandemic-how-to-stop-them/>, 검색일자: 2020. 8. 14.

-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 직렬화된 QR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복사에 전적으로 취약하므로 QR코드의 원본과 사본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해 문제가 됨
 - QR코드의 원본과 사본을 여러 위조제품에 사용하면 통계적으로 여러 번 스캔되므로, 이는 결국 위조품으로 표시되는 문제점으로 발전함

2) AEO 제도를 적극 활용

-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신속통관이 코로나19를 사칭한 범죄행위로 악용되는 부분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AEO 제도란 세관이 안전관리와 법령 준수 체계를 정비한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를 AEO 업체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에 한해서는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세관과 민간 간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¹¹⁸⁾
- AEO 제도를 통해 법규 준수도가 높고, 화물과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한 수출입자들이 판별될 것이므로, 신속통관에 대한 부작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AEO 공인업체는 AEO 공인기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공인기준의 내용이 업체의 자발적 법규 준수 체계를 갖추고 수출입신고서 작성 등의 문서 제출에 합리적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모델이기 때문임
 - AEO 공인기준은 총 4가지로, ① 법규 준수 ② 내부통제시스템 ③ 재무건전성 ④ 안전관리로 구분됨¹¹⁹⁾

118) AEO 제도의 설립 취지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커지는 무역 환경에 편승한 불법 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 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을 보호하기 위해 WCO에서 SAFE Framework 라는 표준안을 제정해 세관과 무역업계 간 협력모델을 도모한 것에서 시작함

119) 안재진·김효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관세청·한국AEO협회, 2013. 12., p. 54~55.

- 법규 준수는 무역업체가 「관세법」, 「대외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신고 적정성 유지를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관련 서류 흐름, 회계처리 관련 부서 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평가함
- 재무건전성은 기업규모와 재정상황(조세 체납 여부, 신용등급 등)을 평가함
- 안전관리는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노무, 취급절차, 건물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과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 여부를 평가함

- AEO 제도의 활용은 신속통관 부작용의 해소뿐만 아니라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출국으로서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음¹²⁰⁾
- 관세청에 따르면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통관 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집계돼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가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함

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대비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정이 어려워지고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이 힘들어지는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WTO 및 EU 등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무역중단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임
- 위드(with) 코로나 시대란,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해 감염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을 뜻함¹²¹⁾

120)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관세청, 「수출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 AEO를 적극 활용하세요」, 보도자료, 2020. 6. 18.,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3110>, 검색일자: 2020. 6. 25.)

- 일본 관세청은 「스마트 세관 구상 2020」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라 향후 세관 직원의 근무형태를 더욱 유연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비대면 업무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둠
 - 원격접속기능을 활용하여 자택에서 세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전자서류를 보편화하여 텔레워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밝힘

- WTO의 오타와 그룹(Ottawa Group)¹²²⁾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맞서 보건 분야 교역 촉진을 WTO에 제안함¹²³⁾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권 보장과 무역왜곡 방지를 위해 WCO 협정 형태를 제안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구적 관세 철폐, 수출입 규제 최소화, 비관세장벽 협의, 전자통관 및 세관협력을 통한 절차 간소화, 수입허가제 투명화 등 제안서를 WTO에 제시함

- EU는 2020년 4월 30일, 미국에 코로나19와 향후 유사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프로그램으로 이른바 ‘범대서양 재건 어젠다’를 제안함
 - EU는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국제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 원유비축 사례를 참고해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 공동비축 프로그램을 제시함¹²⁴⁾

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 ‘위드(with) 코로나’ 정착 필요」,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7. 13.,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637>, 검색일자: 2020. 8. 19.

122) 오타와 그룹은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의장국)·유럽연합(EU)·스위스·노르웨이·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브라질·칠레·멕시코·케냐 등 13개국이 결성한 WTO 내 개혁 소그룹임

123) EC, “Coronavirus: European Commission backs international initiative to facilitate trade in healthcare products,” 2020. 6. 1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042, 검색일자: 2020. 8. 6.

124)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美에 글로벌 위기 공동대응 및 보복관세 철폐 등 제안」, 2020. 5. 12.,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Index=1&no=1797825&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

- 원유와 의약품은 성격이 다르나, 재고 비축, 생산 전환 능력, 예비 생산능력 등 공통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
- 또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 발생 시 의약품, 의료용품 및 장비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약품 인증 등 각종 규제조화 문제도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

V. 결론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중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도 큰 타격을 받았음
- 코로나19의 충격은 길어질 전망이다 유사 전염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 시점에 공표된 다양한 무역지원정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WTO와 WCO 등 국제기구와 미국, EU, 중국 및 일본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조사결과 국제기구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원활한 국제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축 중이며,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구호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코로나19 관련 용품들의 신속통관을 도모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노력 중임
 - 국제기구와 주요국 모두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함께 공조하고 구호물품과 필수재의 자유로운 공급망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각국은 보건 물자를 중심으로 앞다퉀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책임 공방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¹²⁵⁾

125) 『KBS News』, 「무협, “코로나19 끝나면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 올 것”」, 2020. 5. 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5197&ref=A>, 검색일자: 2020. 5. 29.

-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의 단일화된 소통창구,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 그리고 의료용품 수급의 범세계적 어젠다가 필요할 것임
 - 관세청 내 코로나19 무역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관세와 통관 정보들을 한곳에 모으고,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민원대응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과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시행한 신속통관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함
 - 코로나19 관련 위조 또는 변조된 의료용품의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AEO 공인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기업의 AEO 공인율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세관행정의 비대면 조치를 구체화하고, 유사 전염병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용품의 수급문제를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비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범세계적 어젠다를 구축하여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공조해야 할 것임

- 향후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적 지속의 대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긴급재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면의 시나리오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본 보고서의 국제기구,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들을 분석하여 올바른 시나리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¹²⁶⁾

- 각 국가들은 문화와 환경에 따른 차이로 단순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관세와 통관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국가별 제도 비교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126) 이경상,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중원문화, 2020, p. 50.

부록 1. WCO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품목분류코드(HS code) 참고자료¹²⁷⁾

1.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부표 1-1〉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코로나19 진단키트	• 중합효소연쇄반응(PCR) 핵산 시험에 기초한 진단 시약	3822.00
	• 면역 반응에 기반한 진단 시약	3002.15
코로나19 진단 장비 등	• 체외진단을 위한 임상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기	9027.80
코로나19 샘플링키트	• 바이러스성 샘플의 유지관리를 위한 배양 배지와 샘플을 수집하기 위한 면봉이 함께 들어 있는 유리병 세트	3821.00

2. 안면보호용 마스크 등

〈부표 1-2〉 안면보호용 마스크, 장갑, 보호복 등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안면보호용 마스크	• 셀룰로오스 및 종이 마스크(대부분의 국가에서 분류는 4818.90으로, 4818.50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관세청에 확인 부탁)	4818.90
직물제 안면 마스크**	• 방독면처럼 기계적 부분품이나 교환용 필터를 갖춘 것 제외 • 부직포제 수술용 또는 일회용 마스크 포함 • N95 마스크 포함(간단한 호기 밸브가 있을 수 있음)	6307.90
방독면, 눈 보호 또는 안면 보호 마스크	• 생물학적 작용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계적 부품 또는 교체 가능한 필터를 갖춘 것	9020.00
보호용 안경과 고글		9004.90

127) 부록 1. 1~8 에서 2차 개정본과의 차이점을 *신규등록물품, **설명추가, ***품목분류 수정 등으로 표시함

〈부표 1-2〉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플라스틱 안면 실드	• 눈보다 더 큰 범위를 보호하는 것(대부분의 국가에서 분류는 3926.20이 아닌 3926.90으로 되어 있지만,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관세청에 확인 부탁)	3926.90
플라스틱제 장갑	• 비닐장갑 등	3926.20
외과용 고무장갑	• 수술장갑 등	4015.11
기타 고무장갑		4015.19
편물제 장갑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한 것	• 작업장갑 등	6116.10
직물제 장갑	• 면장갑 등	6216.00
일회용 헤어네트	• 재질 무관	6505.00
수술복 상의*	• 느슨한 핏의 유니섹스 상의, 코팅, 커버 또는 기타 처리 없이 촘촘하게 짜여진 면 혼방 소재(50% 이상 면) 원단으로 제작,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식별 가능	6211.42
수술복 하의*	• 느슨한 핏의 유니섹스 롱 팬츠로, 코팅, 커버 또는 기타 처리 없이 촘촘하게 짜여진 면 혼방(50% 이상 면) 원단으로 제작,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식별 가능	6211.42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보호용, 방진용 의류	• 유니섹스 의류	3926.20
고무시트로 만든 보호용, 방진용 의류	• 유니섹스 의류	4015.90
종이 또는 셀룰로오스 의복 및 일회용 종이 병원 가운, 종이 신발 커버 등 의류 액세서리	• 종이, 종이 펄프, 셀룰로오스 충전재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로 만들어진 것 • 종이 또는 셀룰로오스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국 세관청에 확인	4818.50
수술·의료용 방진복	• 펠트나 부직포(HS 5602, 5603)로 만든 것 • 침투, 도포, 피복, 적층 여부 상관 없음 • 방적의류(spun-bonded garments)를 포함함	6210.10
남성용 수술·의료용 방진복	• 직물로 만들어진 것 • 침투, 도포, 피복, 적층 처리된 것	6210.40
남성용 방진복	• 고무 직물로 만들어진 것	6210.40
여성용 수술·의료용 방진복	• 직물로 만들어진 것 • 침투, 도포, 피복, 적층 처리된 것 • 유니섹스 의류	6210.50

〈부표 1-2〉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여성용 방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 직물로 만들어진 것 유니섹스 의류 	6210.50
일회용 보호용 앞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것 	3926.20
일회용 부츠 커버·오버 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것 	392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 또는 셀룰로오스 재질로 만들어진 것 	4016.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직포로 만들어진 것 	4818.90
		6307.90

3. 소독제와 멸균 제품 등

〈부표 1-3〉 소독제와 멸균 제품 등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알코올 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 	22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이 전 용량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 	2208.90
손소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전염성 작용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소매포장 제품 액상 또는 겔 형태 	3808.94
소독 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이나 기타 소독제를 침투시킨, 문지르거나 닦을 수 있는 소매포장제품 	3808.94
자동연결장치를 포함한 내과, 외과 또는 실험실 소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기 또는 끓는 물을 이용한 살균장치 	8419.20
과산화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소(urea)와 함께 응고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대량(bulk) 	284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소독용을 포함하여 내복 또는 외복용으로 사용되는 것 의약품으로 소매포장된 것 	300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면청소 또는 청소기기용으로 과산화수소로 만든 소매 포장된 조제 세정액 	3808.94

〈부표 1-3〉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기타 화학 소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 또는 소독제 준비물로서 또는 알코올, 벤잘코늄 염화용액 또는 과산화수소 또는 기타 소독제를 포함한 소매포장된 것 • 병원에 직접 판매되는 형태의 디클로로이아나누레이트 나트륨(NaDCC, HS 2933.63)과 차아염소산칼슘(65-70% 활성염소, HS 2828.10)이 포함 	3808.94
프로필 알코올(propan-1-ol), 이소프로필 알코올(propan-2-ol)*		2905.12
포름산과 그 염류*		2915.11 2915.12
살리실산과 그 염분*		2918.21
자외선램프*		8539.49
자외선 LED램프*		8539.50
소독 목적의 자외선 조사 장비*		8543.70

4. 산소치료장비 및 맥박 산소측정기

〈부표 1-4〉 산소치료장비 및 맥박 산소측정기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의료용 인공호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폐 안팎으로 이동시켜 통풍을 제공하는 기기 • 산소호흡기와 압축식 자가 충전식 인공호흡기(백 밸브 마스크, BVM) 	9019.20
외막산소화(EC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몸에서 혈액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제거하고 적혈구를 산소로 만드는 장기적 심장 및 호흡 지원을 제공하는 것 • 일부 국가는 ECMO를 9018.90으로 분류하므로 수입국의 관행에 대해 확인 필요 	
지속기도양압기(C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가벼운 기압을 가하는 양압기는 스스로 자연 호흡이 가능하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개방시킴 	

〈부표 1-4〉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이상성기도양압(BiPap 또는 B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압기(CPAP)와 유사하지만, 가압된 공기가 더 높은 흡기양 기도압(IPAP)과 더 낮은 호기양 기도압(EPAP)으로, 두 개의 교대 수준에서 전달되는 것을 제외함 	
산소 농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부착된 비강 캐놀라(또는 프롱)를 통해 주변 공기의 산소를 농축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설계된 장치 이들은 특정 이유로 인해 환자에게 산소를 직접 공급한다는 점에서 산소공장(oxygen plant)과 다름 	9019.20
산소 가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소 공급 시스템에 통합되어 표준 유량보다 높은 속도로 공급될 때 보조 산소를 가습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산소 공급 방법은 코(예: 비인두 카테터를 통해)를 우회함 	9019.20
산소공급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소마스크, 벤투리마스크, 산소텐트, 산소 헤드박스, 이와 유사한 산소공급장치들 	90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강호흡관(nasal canulae)은 두 개의 짧은 테이퍼로 처리된 플라스틱 관으로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 코에 삽입 	901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강카테터(nasal catheter)는 얇고 유연한 관으로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 비강에 팁을 이용해 코에 삽입 	9018.39
유량계, 산소용 소프관 0-15L/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orpe tube 유량계는 주입구 및 유출구 포트, 조절기, 밸브 및 투명한 테이퍼드(tapered) 형태의 측정 튜브임 중앙집중식 시스템, 실린더, 집선기 또는 압축기와 같은 다양한 의료 가스원과의 연결에 적합함 특정 유량 범위에 적합한 표준(absolute, non-compensated) 및 압력 보정 유량계 버전에 한함 	9026.80
공급분할기 (Flow split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용 산소를 단일 공급원에서 여러 개의 독립된 배출구로 분배하기 위한 기기 	9019.20
맥박산소측정기 (Pulse oxi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맥혈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SpO₂)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 차광 흡수 원리를 사용하여 센서(probe)가 신체 부위(예: 손가락, 발가락 또는 귓볼)에 적용될 때 SpO₂를 결정 	9018.19

5. 기타 의료기기와 장비

〈부표 1-5〉 기타 의료기기와 장비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컴퓨터 단층 촬영(CT) 스캐너	• 회전하는 X선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얇은 조각들을 이미지화하여 폐렴과 같은 질병을 진단	9022.12
초음파 기계	• 휴대용 초음파 기계는 보통 특수 설계된 카트와 부속품이 함께 수입됨	9018.12
심전도체	• 휴대용 심전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액세서리가 함께 제공됨	9018.11
다중 파라미터 환자 모니터링 장치	• 다중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소	9018.19
후두경	• 내시경을 전기진단 장비 또는 기타 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경우 수입국 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입국 관세청에 문의	9018.19 또는 9018.90*
비색도계 검출기 (Colorimetric end tidal CO2 detector)	• 소아 및 성인 기관 내 튜브와 호환되는 크기이며, 일회용인 것	9027.80
적외선 온도계·디지털 온도계**		9025.19
청진기		9018.90
매길겸자 기관 내 삽관 (Magill intubation forceps)	• 직각 기관 튜브를 후두로 또는 비위 관을 식도로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각진 겸자	9018.90
재사용 가능 삽관 키트		9018.90
주입펌프	• 부속품 포함 여부 불문 • 주입 펌프를 펌프 또는 기타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경우 수입국 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입국 관세청에 문의	8413.19 또는 9018.90
전자식 드롭카운터 (drop counter)		9028.20
의료용 흡입 펌프	• 신체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	9018.90
혈관 통로용 의료 드릴	• 부속품 포함 여부 불문	9018.90
곡반(Kidney basins)	•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얇은 신장 모양의 그릇으로, 신체의 배출물 및 기타 위생 목적으로 사용됨	7324.90

6. 기타 의료소모품(일회용품)

〈부표 1-6〉 기타 의료소모품(일회용품)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의료용 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82%의 순수 산소를 가지고 있으며, 오염이 없으며, 오일 없는 압축기에 의해 생성된 것 • 실린더에 압축된 산소와 액체 산소를 모두 포함 • 일부 국가에서는 산소와 함께 실린더를 별도로 보고해야 할 수 있으니 수입국 관세청에 문의 	2804.40
충전재(Wadding), 거즈, 붕대, 면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제약물질이 침투, 도포되었거나 소매 포장된 것 	3005.90
수술 테이프 자체 접착성, 저자극성		3005.10
투명접착플라스터		3005.10
비누 액체 또는 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를 초과하지 않는 알코올 또는 글리세롤이 첨가되거나 합성 유기 표면 활성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 물 속 비누의 액체 용액을 포함 	34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 형태(화장실용 비누의 약품 바 포함) 	3401.11
액체, 크림, 스킨워시 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계면활성제 및 기타 물질의 혼합물(비누 함유 여부에 관계없이)로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된 것 	3401.30
주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 포함 여부 불문 	9018.31
관(tube) 모양의 금속 바늘 및 봉합용 바늘		9018.32
바늘(관형 금속 바늘 및 봉합용 바늘 제외), 카테터, 캐놀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프스(cuffs) 포함 불문의 기관 내 튜브(endotracheal tubes) 카테터 • 비인두기도(Nasopharyngeal airways) 카테터 • 구강인두기도(Oropharyngeal airways) 카테터 	9018.39
일회용 삼관키트		9018.90
갑상선 절제술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환자의 기도를 확립하기 위해 피부와 갑상선 기능 저하막을 통해 응급 절개 또는 펑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세트 • 비상시 사용되는 일회용품 • 6단위는 설정내용에 따라 상이함 	9018
플라스틱 유해 폐기물 처리 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을 위한 폐기용 봉투('BioHazard' 인쇄물, 오토클라블 폴리프로필렌, 50~70미크론 두께) 	3923.29
소변 주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수집을 위한 비닐봉투, 배출구 탭, 비반환 밸브 포함 	3926.90

〈부표 1-6〉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바디백 - 감염 관리 등급,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멍 없는 가방 감염관리 등급봉투에 대한 특정 기준 적용 	3926.90
종이 침대시트		4818.90
ECG 또는 초음파 시술에 사용되는 전도성 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의 임피던스를 줄이기 위해 심전도 또는 초음파 기기 사이에 사용 	3006.70
의료 절차용 젤리 윤활유		3006.70
X-Ray 필름 또는 플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 모양의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 	3701.10
X-Ray 필름 또는 플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롤모양의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 	3702.10
일회용 커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용으로 부직포(HS 5603)로 구성된 것 	6307.90
병원용 부직포 흡수 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직포 직물 패드(침투, 도포, 피복, 적층 여부 상관 없음)는 필요에 따라 절단을 위해 롤 형태로 제공되거나 더 이상 작업하지 않고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자르기만 한 것 6단위는 패드 무게에 따라 상이함 	5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부직포 직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 층으로 조립된 헴(hemmed) 패드 또는 여러 층으로 조립된 패드 형태도 있음 일부 국가는 이러한 패드를 6304로 분류하므로 수입국 관세청에 문의 	6307.90

7. 구급차 등 차량

〈부표 1-7〉 구급차 등 차량

품목	추가정보	HS CODE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동식 또는 기타 기계식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용 	8713.10 8713.90
구급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단위는 엔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8703
이동식 클리닉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실, 마취 장비 및 기타 수술 장비를 갖춘 이동식 클리닉(의료용) 	8705.90
이동식 방사선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실, 어두운 방 및 완전한 방사선 장비가 장착된 것 	8705.90

8. 기타 코로나19 관련 물품

〈부표 1-8〉 기타 코로나19 관련 물품

품목	추가정보	HS CODE
의료용 또는 수술용 가구	• 수술대, 검사대, 기계식 부속품이 있는 병원침대, 특별히 설계된 기구용 테이블, 마취제 또는 수술용품 및 그 부품 포함	9402.90
가압교대흡착방식 (Pressure Swing Adsorption, PCA) 산소공장	• 의료용 등급 산소의 중앙 산소 공급 시스템을 위한 것 • 환자 영역 내의 터미널 유닛에 직접 파이핑되거나 실린더를 재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용 등급 산소의 대규모 현장 중심 공급원 • 산소공장은 대기 중에서 질소를 흡착하고 오염물질을 걸러내 다양한 산소치료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며, 그것들은 그 자체로 치료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산소의 공급을 만들어냄	8421.39
빈(Empty) 의료 가스 실린더, 휴대용, 산소용, 밸브 및 압력 및 유량 조절 장치	• 철강 또는 철강합금 재질	7311.00
	• 알루미늄 재질	7613.00
임시 캐노피를 포함한 병원 설치 텐트*	• 플라스틱 재질	3926.90
	• 합성섬유 또는 기타 섬유 재질	6306.22
오염 제거·오염 제거 터널 또는 실(chamber)*	• 오염 제거 또는 멸균을 위해 사람을 씻어내도록 설계된 분무 장비 또는 워크인 또는 워크스루 분무실이 장착된 텐트로 구성된 휴대용 오염 제거실	8424.89
실험실용, 위생용 또는 의약품용 유리제품*	• 등급이나 눈금 표시 여부 불문	7017.10
		7017.20
		7017.90

부록 2. EU의 재난물품 면세 적용 목록

〈부표 2-1〉 EU의 재난물품 면세 적용 목록

품목	추가정보	HS CODE	MFN 관세율(%)
의료기기	• 중환자실 및 집중치료실 인공호흡기	9019 20 00	
	• 의료용 산소호흡기(인공호흡장비)		
	• 산소텐트 등 기타 산소 치료 장비		
	• 체외막 산소공급 장치	9018 90	
모니터	•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이동식 장치 포함)	8528 52 91	
		8528 52 99	
		8528 59 00	14
펌프	• 영양공급용 연동펌프	9018 90 50	
	• 약물주입용 펌프	9018 90 84	
	• 흡입용 펌프	8413 81 00	
	• 흡인 탐색용 장치	9018 90 50	
튜브	• 기관 내 삽관 튜브	9018 90 60 9019 20 00	
	• 멸균 튜브	3917 21 10 3917 39 00	6.5
헬멧	• CPAP·NIV 헬멧	9019 20 00	
NIV 전면 마스크	• NIV 전면 마스크 및 코·입가림 마스크	9019 20 00	
흡입 시스템 및 기계장치	• 흡입 시스템	9019 20 00	
	• 전동식 흡입기	9019 20 00	
가습기	• 가습기	8415	2.2~2.7
		8509 80 00	2.2
		8479 89 97	1.7
후두경	• 후두경	9018 90 20	

〈부표 2-1〉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MFN 관세율(%)
의료소모품	• 삽관 키트 복강용 가위	9018 90	
	• 바늘 부착 및 미부착 주사기	9018 31	
	• 튜브형 금속 바늘, 봉합용 바늘	9018 32	
	• 바늘, 카테터, 캐놀라	9018 39	
	• 혈관 주사용 키트	9018 90 84	
모니터 기기, 전자 진단장비	• 중환자실용 중앙 모니터 장치	9018 90	
	• 환자 모니터용 장치	9018 19 10	
	• 전자진단장비	9018 19 90	
이동식 초음파 스캐너	• 이동식 초음파 스캐너	9018 12 00	
심전계	• 심전계	9018 11 00	
컴퓨터 단층촬영 시스템과 스캐너	• 컴퓨터 단층촬영 시스템	9022 12, 9022 14 00	
마스크	• 교체 필터나 장치 없는 천 마스크	6307 90 10	12
	• 일회용 수술용 마스크, FFP2, FFP3 마스크	6307 90 98	6.3
	• 종이 소재 수술용 마스크	4818 90 10 4818 90 90	
	• 교체 필터나 장치가 부착된 생화학적 입자 제거용 가스 마스크, 안구보호, 얼굴 전면 보호용 마스크	9020 00 00	1.7
장갑	• 비닐장갑	3926 20 00	6.5
	• 수술용 고무장갑	4015 11 00	2
	• 다용도 고무장갑	4015 19 00	2.7
	• 비닐, 고무 코팅된 니트 소재 장갑	6116 10	8.9
	• 니트 소재가 아닌 천장갑	6216 00	7.6
얼굴 가리개	• 일회용 및 재사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	3926 20 00	6.5
	• 비닐 얼굴 가리개 (눈 부위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리는 것)	3926 90 97	
보호용 안경, 고글	• 보호용 안경 및 고글	9004 90 10 9004 90 90	2.9

〈부표 2-1〉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MFN 관세율(%)
커버올작업복(Coveralls) - 방수가운, 펠트, 부직포 소재 수술·의료용 보호 복(방수 및 미방수 소재 일체)	• 경화 고무 코팅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장갑, 병어리장갑 일체)	4015 90 00	5
	• 보호복	3926 20 00	6.5
	• 진료복 등 액세서리	4818 50 00	
	• 니트 소재 의상	6113 00 10	8
		6113 00 90	12
	• 다용도 나트 소재 의상	6114	12
	• 펠트, 부직포 소재 수술·의료용 보호복(방 수 및 미방수 소재 일체)	6210 10	12
	• 고무 처리되거나 코팅된 기타 보호복 6210 20 6210 30 6210 40 6210 50	12	
부츠커버·신발덮개	• 부츠커버 및 신발덮개	3926 90 97	6.5
		4818 90 10	
		6307 90 98	6.3
의료용 모자	• 윗 부분이 올라온 모자	6505 00 30	2.7
	• 모자, 머리에 쓰는 도구, 여러 소재의 머리 망	6505 00 90	
	• 기타 머리에 쓰는 도구	6506	
체온계	• 수은체온계를 포함한 액체 용액으로 제작 된 눈금 확인할 수 있는 체온계	9025 11 20	2.8
	• 일반 임상용 체온계	9025 11 80	
	• 디지털 체온계, 이마에 비접촉식으로 사용 하는 적외선 체온계	9025 19 00	
손세정비누	• 비누 및 유기계면활성 제품	3401 11 00	4
	• 화장실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질	6401 19 00	
	• 다른 형태로 제작된 비누 및 유기계면활성 제품	3401 20 10 3401 20 90	
	• 비누를 제외한 유기계면활성 성분	3402 12	
	• 비누가 포함된 혹은 미포함된 액체나 크림 제형의 피부 세정을 위한 유기계면활성 제품	3401 30 00	
벽면 부착 손소독제 디스펜서	• 벽면 부착 손소독제 디스펜서	8479 89 97	1.7

〈부표 2-1〉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MFN 관세율(%)
하이드로알코올 용액(L)	• 2207 10: 80% 이상 에틸알코올을 포함한 비변성 제품	2207 10 00	19,2€/hl
	• 2207 20: 모든 에틸알코올 포함 비변성 제품	2207 20 00	10,2€/hl
	• 2208 90: 80% 이하 에틸알코올을 포함한 비변성 제품	2208 90 91	1€/% vol/hl +6,4€/hl
		2208 90 99	1€/% vol/hl
3% 과산화수소 용액(L) 살균제 제조용	• 질소화합물로 응고되거나 그렇지 않은 과산화수소 제품	2847 00 00	5.5
	• 대용량 과산화수소		
	• 손소독제	3808 94	6
	• 기타 살균 물질		
비상용 손수레	• 장애인 운반 장비(휠체어)	8713 90 00	
	• 병원 및 의원 내 환자 이동을 위한 들것 및 바퀴달린 들것	9402 90 00	
RNA 추출장비	• RNA 추출 장비	9027 80	
코로나19 테스트키트, 진단장비 및 도구	•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키트	3002 13 00	
		3002 14 00	
	• 항체항원 반응 기반 진단 시약	3002 15 00	
		3002 90 90	
	• 폴리메라아제 연쇄반응(PCR) 핵산 기반 진단 시약	3822 00 00	
	• 시험관 진단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기구	9027 80 80	
• 샘플링 키트	9018 90		
	9027 80		
면봉	• 충전재, 거즈, 반창고, 면봉 등 유사 의료용품	3005 90 10	
야전병원 건립용 장비	• 병원용 침상	9402 90 00	
	• 텐트	6306 22 00	12
		6306 29 00	
	• 비닐 텐트	3926 90 97	12

〈부표 2-1〉의 계속

품목	추가정보	HS CODE	MFN 관세율(%)
의약품	• 약제 포장된 과산화수소, 해열제류 - 하이드로클로로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렘데시비르, 토실리주마브	3003 90 00 3004 90 00	
의료, 수술 및 실험실 살균제	• 의료, 수술 및 실험실용 살균제	8419 20 00	
프로필 알코올 및 이소프 로필 알코올	• Propan-1-ol(propyl alcohol) and propan-2-ol(isopropyl alcohol)	2905 12 00	5.5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에테르-페놀, 알코올 페 록사이드, 에테르 페록사 이드, 케톤 페록사이드	• Ethers, ether-alcohols,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alcohol peroxides, ether peroxides, ketone peroxides	2909	무관세/ 5.5
포름산	• 포름산	2915 11 00 2915 12 00	5.5
살리실릭산	• 살리실릭산	2918 21 00	6.5
수술용 일회용 가리개 천	• 수술용 일회용 가리개 천	6307 90 92	6.3
의료용 부직포	• 의료용 부직포(방수 및 코팅 처리된 제품 및 되지 않은 제품 일체)	5603 11 10 5603 94 90	4.3
수술, 진료, 위생 용도 사 용 물품(소매 판매 불가)	• 종이 소재 침대시트	4818 90	
실험실, 약국용 유리 용기	• 눈금이 있거나 없는 실험실, 약국용 유리 용 기	7017 10 00 7017 20 00 7017 90 00	3

주: MFN 관세율 공란은 무관세란 뜻임

자료: 유럽위원회(EC), COVID-19 - INDICATIVE LIST OF PRODUCTS TO BE IMPORTED DUTY - VAT FREE, 2020. 5. 5;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03-04-2020-import-duties-vat-exemptions-on-importation-covid-19-list-of-goods.pdf, 검색일자: 2020. 6. 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중요 의료물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6개월간 면제」, 2020. 4. 22.,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1293>, 검색일자: 2020. 6. 22.

참고문헌

<국문 자료 및 보고서>

- 관세청,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보도자료, 2020. 3. 5.
- _____,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대책」, 보도자료, 2020. 3. 26.
- _____, 「코로나19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보도자료, 2020. 4. 8.
- _____,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통관 가능합니다」, 2020. 4. 27.
- _____,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보도자료, 2020. 4. 28.
- _____, 「관세청,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보도자료, 2020. 4. 29.
- _____, 「항공기 중단 대응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보도자료, 2020. 5. 1.
- _____,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보도자료, 2020. 5. 15.
- _____, 「노석환청장 경제활력제고수출입기업간담회개최」, 보도자료, 2020. 5. 22.
- _____, 「관세청,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보도자료, 2020. 6. 15.
- _____, 「수출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 AEO를 적극 활용하세요」, 보도자료, 2020. 6. 18.
- _____,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보도자료, 2020. 6. 30.
- _____, 「보건용 마스크 등 ‘한시적목록통관반입’ 조치종료」, 보도자료, 2020. 7. 8.

- _____,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안내(7. 11)」, 보도자료, 2020. 7. 10.
- 기획재정부,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보도자료, 2020. 3. 17.
- 김경환, 「코로나관련 간담회 발표자료(중국해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담회 발표자료, 2020. 7. 16.
- 『노컷뉴스』, 「인간 전염되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중국서 발견」, 2020. 6. 30., <https://www.nocutnews.co.kr/news/5369665>, 검색일자: 2020. 6. 30.
-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주요 FTA 통관지원제도」, 『통상』, 통권 제97호, 2020. 6. 1.
- 안재진·김효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관세청·한국AEO협회, 2013. 12.
- 『연합뉴스』, 「WHO “코로나19 최악 아직 안왔다”」, 2020. 6. 3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30018300038?did=1825m>, 검색일자: 2020. 6. 30.
- 윤보라, 「두 번의 초대형 위기, 중국의 대응이 달라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4. 2.,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953>, 검색일자: 2020. 7. 9.
- 이경상,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중원문화, 2020.
- 이주미 외,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KOTRA, 2020. 6.
- 임소현, 「미국, 수입관세 지불기한 최대 90일까지 유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4. 2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1425>, 검색일자: 2020. 6. 12.
- _____, 「미 식품의약국,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지침 발표」, 2020. 4.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949>, 검색일자: 2020. 7. 28.
- 『조세일보』,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친 영향… 5월 1~10일 수출 46.3%」, 2020. 5. 1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5/20200511397709.html>, 검

- 색일자: 2020. 5. 20.
- _____, 「FDA 인증품 믿었는데… 코로나 틈타 중국산 체온계 불법유통」, 2020. 7. 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03401399.html>, 검색일자: 2020. 8. 14.
- 『중앙일보』, 「다른 나라는 안 쓴다, 한국만 있는 ‘컨트롤타워」, 2018. 11. 10., <https://news.joins.com/article/23112520>, 검색일자: 2020. 8. 18.
- _____, 「-3.3% 역성장 쇼크」, 2020. 7. 24.,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206>, 검색일자: 2020. 7. 24.
- 『한국세정신문』,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통관애로 해소 지원」, 2020. 2. 6.,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476>, 검색일자: 2020. 8. 1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VID-19 관련 관세 및 통상관련 국외동향-미국, EU」,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담회 발표자료, 2020. 7. 16.
- 『KBS News』, 「무협, “코로나9 끝나면경쟁적보호무역시대올것”」, 2020. 5. 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5197&ref=A>, 검색일자: 2020. 5. 29.

〈영문 보고서〉

- KPMG, “KPMG Report: Customs measures in response to coronavirus (COVID-19)”, 2020. 4. 8.
- 유럽위원회(EC), *COVID-19 - INDICATIVE LIST OF PRODUCTS TO BE IMPORTED DUTY - VAT FREE*, 2020. 5. 5.
- _____, “COVID-19: Guidelines on the progressive restoration of transport services and connectivity,” 2020. 5. 13.
- _____, *Submission of Proofs of Preferential Origin during the CoVid19 Crisis*, 2020. 3. 31.
- WCO, “Customs and Tariff Bureau - Japan,” 2020. 3. 30.
- _____, *Guidance on How to Communicate During a Crisis*, WCO, 2020. 4. 24.

_____, *HS classification reference for Covid-19 medical supplies 3.01 Edition*,
WCO, 2020. 6. 2.

_____, *WHAT CUSTOMS CAN DO TO MITIGATE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WCO, 2020. 5. 20.

〈국내 웹사이트〉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의약품 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해외 웹사이트〉

미국 관세청(CBP), <https://www.cbp.gov/>

미국 농무부(USDA), <https://content.govdelivery.com/>

미국 식품의약처(FDA), <https://www.fda.gov/>

미국연방정부공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

미국 CCRT, <https://imports.cbp.gov/>

유럽위원회(EC), <https://ec.europa.eu/>

일본 재무성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

중국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EUR-Lex, <https://eur-lex.europa.eu/>

WCO, <http://www.wcoomd.org/>

weforum, <https://www.weforum.org/>

WTO, <https://www.wto.org/>

WTO tfafacility, <http://Tfafacility.org/covid19-trade-facilitation>

관세연구 20-03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관세와
통관제도 관련 지원 정책 비교 연구: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발 행 2020년 10월 31일

저 자 정재현 · 김다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00-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